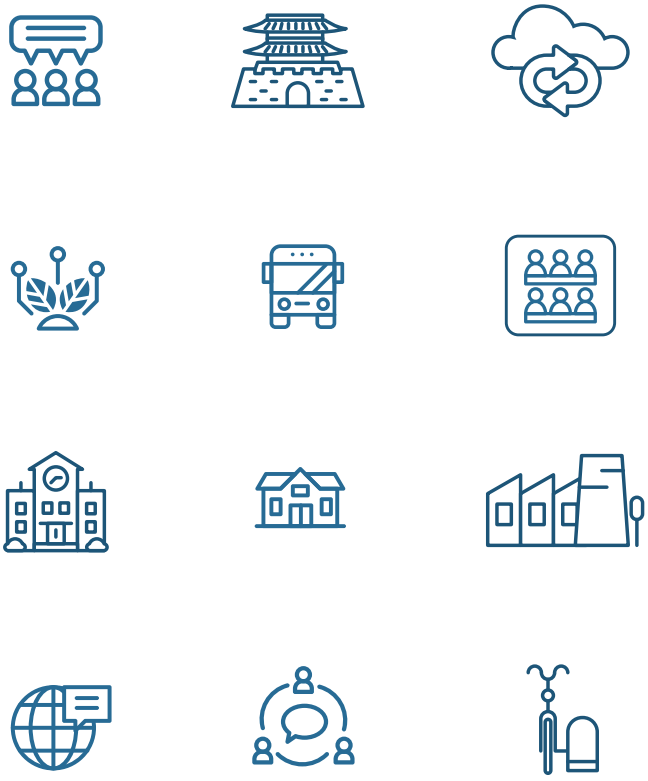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7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 7

2. '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산림정책 권한 강화 [산림청] ····· 17

3.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25

4.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착수…28년 본격 상용화 [국토교통부] ····· 45

5.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 현황 및 평가 [관계부처 합동] ····· 51

6.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61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사례 [부산광역시 외] ····· 71

2.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 운영 [경기도] ····· 77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지역별 인구 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3

2.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96

3. AI 입은 로봇, '신체화 AI' 현황과 전망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106

4.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112

5. 올림픽에서 엑스포까지, 메가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국회도서관] ····· 118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스타트업 파크 신축 구축사업 계획의 보완 필요 [산업통상벤처기업위원회] ····· 129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대상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135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경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논의 필요 [교육위원회] ····· 141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25.06.)

◇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밑거름으로 작용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안건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됨('25.06.)

1 추진배경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에 따라 조사 실시 의무화, **5년 1주기 종합조사** 실시

* ('23)종합 → ('**24**/26)**기초생활/환경경관/안전/공동체** → ('25/'27)의료/복지/여가/교육/경제 → ('28)종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농어업인 복지 증진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시행** 시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 예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년)에 따라 설치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관계 부처 장관(15명) 및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되며, 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2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3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농촌(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원

* 표본추출틀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가구주·원 2종) 활용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24년 9월 1일 ~ 10월 15일

○ 조사내용 : 5개 부문 68문항

- (가구주) 가구 일반항목 20문항, (가구원) 개인 항목 48문항

* 기초생활여건(17), 환경·경관(9), 안전(9), 지역사회·공동체(14), 생활전반(19)

4 주요내용 및 정책제언

○ **기초생활 여건**

-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며,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 12.4%) 순으로 나타남.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율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낮게 나타나,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 단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 **대중교통 평균 배차 시간**은 **69.3분**으로 읍(47.2분)보다 면(88.5분)에서 긴 편으로 조사됨. **대중교통 이용률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53.1%)와 70대 이상 연령층(41.6%)**에서 높게 나타남.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벽지 노선 지원(국토교통부) 등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지속성이 요구됨

-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농촌 주민 72.1%가 자가용을 주요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농촌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 정책 대신 **농촌형 교통 시스템과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농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함

○ **환경·경관**

- **농어촌 주민의 절반 이상(51.9%)은 쓰레기(13.3%), 소음·진동(11.6%), 악취(11.5%) 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이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기반 확충(환경부),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농촌진흥청), 생활폐기물 수거 확대(환경부)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전**

- 거주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71.2%)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화재 안전(47.6%)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농어촌지역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경찰청)으로 농어촌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산불 피해 예방(산림청)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공동체**

- **마을 공동사업**이 주민 화합(50.7%), 마을 발전(48.3%), 주민 소득 증대(47.3%)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참여는 저조(12.7%)**함.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1.0%에 그쳐 효과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시행하려면 공동체를 육성하고, 젊은 층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전반**

- **지역 생활 종합 만족도**는 **54.8점**으로 2023년 56.3점보다 약간 하락함. 경제 활동, 기초생활 여건, 의료, 복지 부문 중요도는 2023년보다 높아졌으나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외]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심화**로 인해 **농어업인 복지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전북의 현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임

○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농어촌의 낮은 도시가스 이용률, 긴 대중교통 배차 간격**(면 지역 평균 **88.5분**), **생활환경 불편, 낮은 화재 안전 인식** 등은 전북자치도 역시 직면하고 있는 핵심 문제임

○ 특히 **높은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복지 격차,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 쓰레기 및 악취**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의 **화재 안전**은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적임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촌형 교통모델(행복택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오지마을 상수도 보급,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존 사업들이 **농어업 주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 따라서, **면 단위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영농 및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전북자치도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이를 총괄적으로 뒷받침할 포괄적인 조례는 미비한 상황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이에 따라,「**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복지 증진 조례'(가칭)」 제정의 검토 필요성**이 부각됨. 해당 조례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명확한 책무 규정, 복지 분야별(에너지, 교통, 생활환경, 안전, 의료 등)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 유관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의「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 외에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간접적인 복지 증진 사업들이 전북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확대 개정**하여 **법적 정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고 **주요 항목 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25.6.)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목적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194개 읍면의 400개 조사구에 거주하는 가구

조사기간 2024년 9월 1일~10월 15일(약 1.5개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가구 방문 직접면접조사

제1부 가구 조사 결과

주택 건축년도

평균 25.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3.8%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52.7%
아파트	34.6%
연립/다세대주택	10.5%

주택의 점유형태



월세/연세	11.6%
전세	9.6%
무상	7.0%

월평균 소득액

100~200만원 미만	20.6%
200~300만원 미만	19.8%
300~400만원 미만	17.2%
100만원 미만	16.6%
400~500만원 미만	11.1%

월평균 생활비

가구당 184.6만원

1인당 89.6만원

식료품비	63.5만원	교육비	16.2만원
주거비	10.6만원	교통/통신비	37.0만원
보건의료비	13.8만원	기타	25.8만원
광열수도비	17.7만원		

농어가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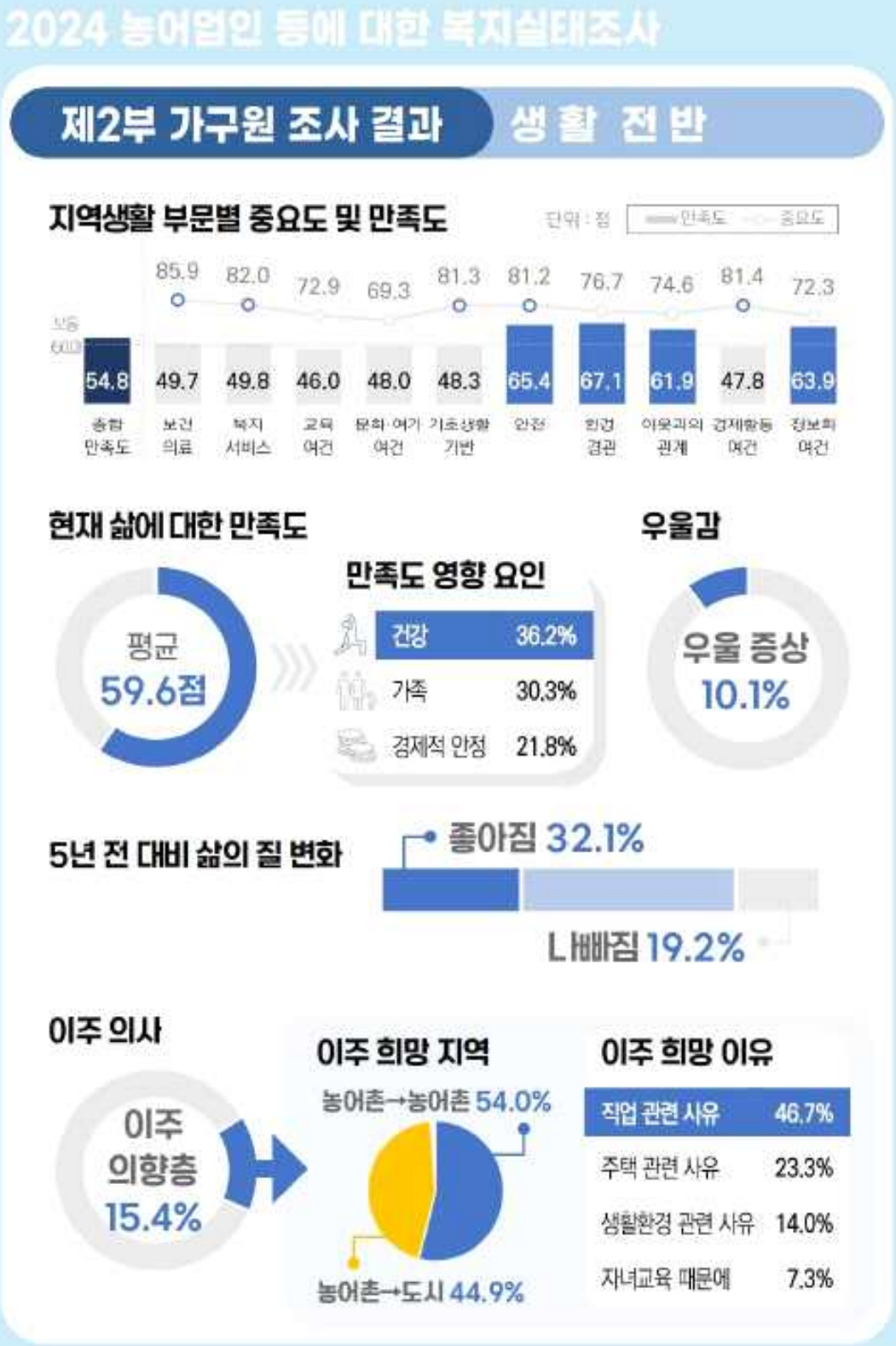
농어가 전업 또는 겸업 여부

전업 63.5%

겸업 36.5%

영농형태

논벼	42.1%
노지채소	16.7%
식량작물, 과수	각 14.7%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제2부 가구원 조사 결과 생활 전반
지역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단위 : 점
만족도
중요도
85.9
82.0
72.9
69.3
81.3
81.2
76.7
74.6
81.4
72.3
54.8
49.7
49.8
46.0
48.0
48.3
65.4
67.1
61.9
47.8
63.9
종합 만족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여가 여건
기초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과의 관계
경제활동 여건
정보화 여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59.6점
만족도 영향 요인
건강 36.2%
가족 30.3%
경제적 안정 21.8%
우울감
우울 증상 10.1%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좋아짐 32.1%
나빠짐 19.2%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15.4%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농어촌 54.0%
농어촌→도시 44.9%
이주 희망 이유
직업 관련 사유 46.7%
주택 관련 사유 23.3%
생활환경 관련 사유 14.0%
자녀교육 때문에 7.3%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제2부 가구원 조사 결과 기초생활여건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전반	60.3점
주택 면적	64.9점
주택 구조	61.8점
주택 설비	58.5점
주택 성능	57.1점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상수도 수질	72.4점
하수 처리	70.6점
쓰레기 처리	66.7점
정보통신여건	66.4점
생활서비스 이용	49.4점
대중교통 이용	47.3점

주요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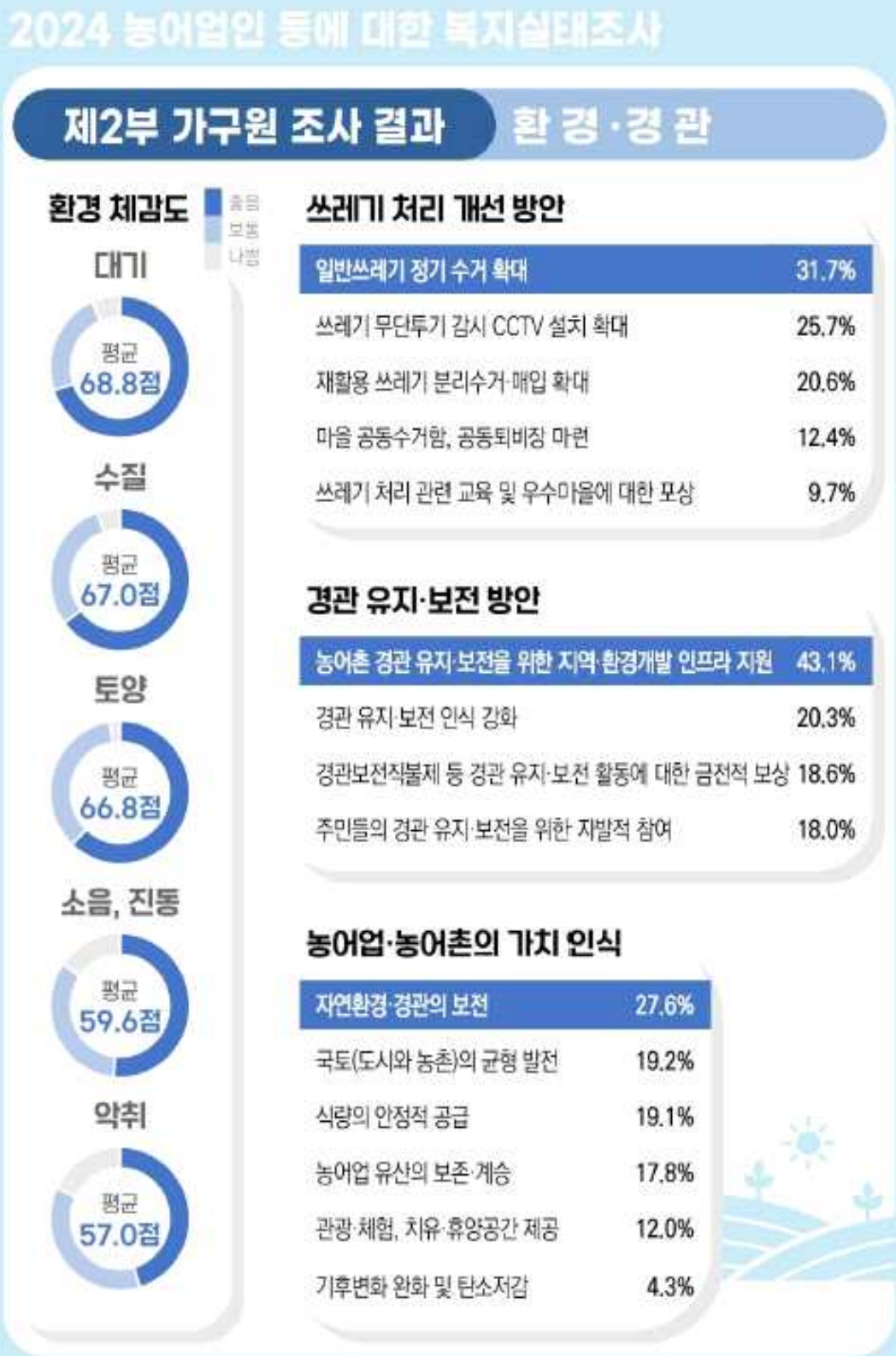
대중교통 19.9%
(버스, 기차, 배 등)

대중교통 배차간격

평균 69.3분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에 대한 인식

	택시형	버스형
인지층	39.7%	33.0%
이용층	9.2%	11.8%
연간 이용 횟수	평균 16.6회	평균 26.5회
필요 정도	75.0%	69.7%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제2부 가구원 조사 결과 환경·경관
환경 체감도
좋음
보통
나쁨
대기
평균 68.8점
수질
평균 67.0점
토양
평균 66.8점
소음, 진동
평균 59.6점
악취
평균 57.0점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일반쓰레기 정기 수거 확대 31.7%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확대 25.7%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매입 확대 20.6%
마을 공동수거함, 공동퇴비장 마련 12.4%
쓰레기 처리 관련 교육 및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9.7%
경관 유지·보전 방안
농어촌 경관 유지·보전을 위한 지역·환경개발 인프라 지원 43.1%
경관 유지·보전 인식 강화 20.3%
경관보전직불제 등 경관 유지·보전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18.6%
주민들의 경관 유지·보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 18.0%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27.6%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19.2%
식량의 안정적 공급 19.1%
농어업 유산의 보존·계승 17.8%
관광·체험, 치유·휴양공간 제공 12.0%
기후변화 완화 및 탄소저감 4.3%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제2부 가구원 조사 결과 안 전

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안전한 보행자 길 정비	23.1%
CCTV 설치 확대	22.6%
가로등 확충	16.9%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 및 빈집, 방치된 빈터 관리	16.7%

재난 예보 도움 정도



도움 됨 72.9%

화재 취약 요소

노후 주택의 전기·가스 시설	36.5%
담뱃불	20.6%
겨울철 화목보일러·난로, 온열기 등 난방기구	20.5%
논두렁·밭두렁·야외 쓰레기 소각	16.5%
비닐하우스, 축사의 노후 전기시설	5.8%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

소방시설 안전 점검 확대	27.5%
가구 내 소화기, 화재경보기 보급	23.2%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관리 방법 교육 실시	18.5%
소방차 진입도로 개선	16.9%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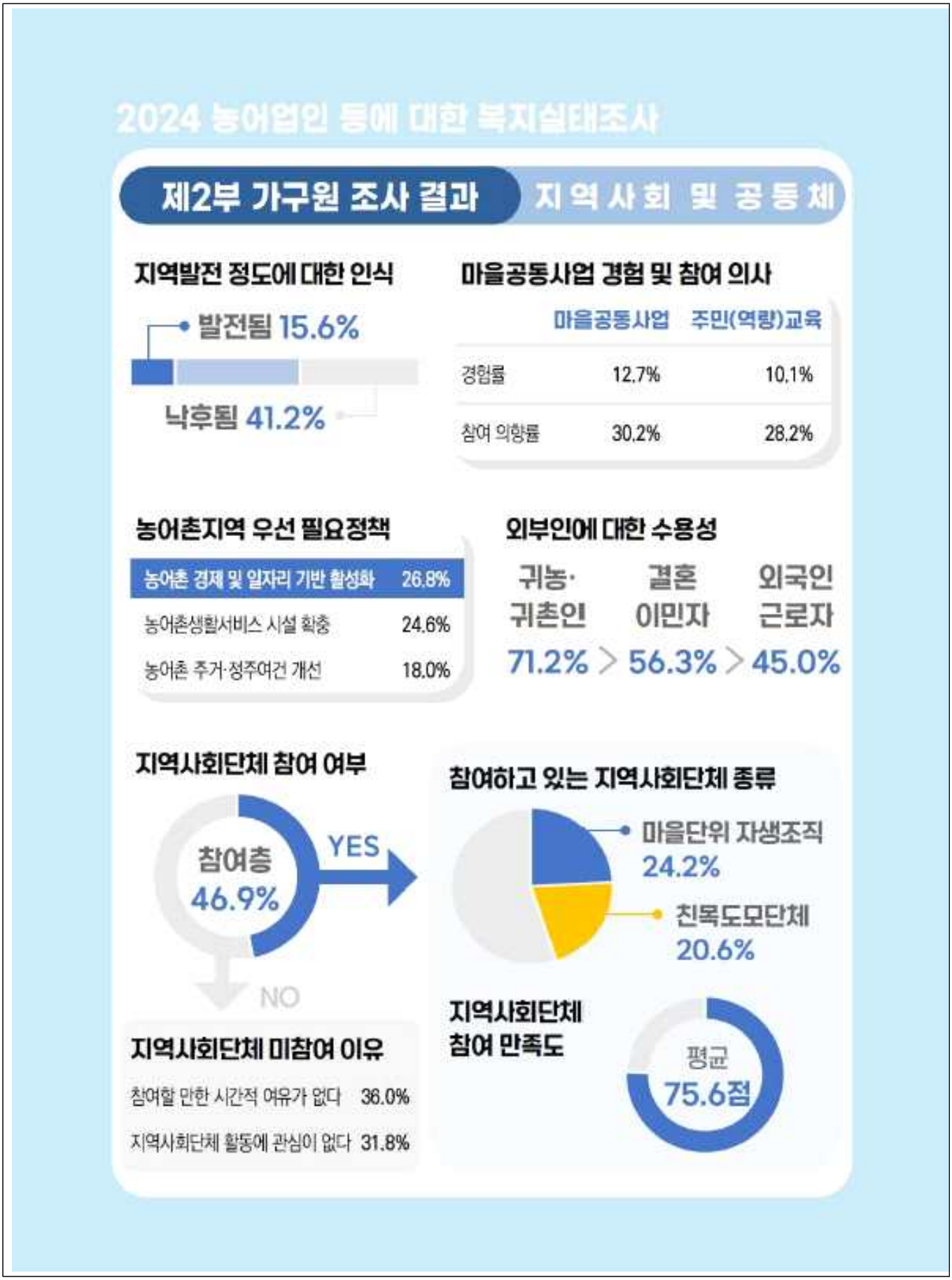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인지도

신고 전화번호	행동 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 소생술 방법
97.7%	86.1%	77.6%	51.2%

마을 안전 체감도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제2부 가구원 조사 결과
지역사회 및 공동체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발전됨 15.6%
낙후됨 41.2%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마을공동사업
주민(역량)교육
경험률
12.7%
10.1%
참여 의향률
30.2%
28.2%
농어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농어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26.8%
농어촌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24.6%
농어촌 주거·정주여건 개선 18.0%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귀농·귀촌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71.2% > 56.3% > 45.0%
지역사회단체 참여 여부
참여층 46.9%
YES
NO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종류
마을단위 자생조직 24.2%
친목도모단체 20.6%
지역사회단체 미참여 이유
참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36.0%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관심이 없다 31.8%
지역사회단체 참여 만족도
평균 75.6점

2. '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산림정책 권한 강화 (산림청, '25.07.)

◇ 2025년 하반기, 산림청의 수요자 중심 산림정책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대폭 강화됨. 수목원·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 조례 위임이 가능하며,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 기준 완화, 나무병원 명칭 사용 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 행위 제한 완화, 가축 방목 시 입목 보호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 국민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둠

1 추진배경 및 목적

○ 산림청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산림정책을 소개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정책 추진 기반 마련, 증가하는 정원 서비스 수요에 대응 및 전문적인 수목 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근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6.21. 시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5.7.1. 시행), 「산림보호법」('25.6.4.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령」('25.7.8. 시행) 등

3 주요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산림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함

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및 입법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할 때 **기존 산림청장 사전 승인 절차가 사전 통보로 간소화**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수목원·정원 조성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또한, 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및 특정 대상에 대한 맞춤형 혜택 제공 가능

② 국민 체감형 산림 서비스의 품질 및 전문성 강화

- 지난 10년간 50배 이상 증가한 정원('15년 4개소 → '25년 217개소)의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품질평가단'**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자격 기준 완화**

 * 예를 들어, 산림·조경·시설원예 기술사의 경력 기준이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고, 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 등 해당 자격분야 기사의 경력 기준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함

- 또한,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수목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만 '나무병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 제한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

③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기존 양식장 및 양어장 설치 시 제한되던 **면적 기준(3,000㎡ 미만) 삭제**,「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5,000㎡ 미만) 적용으로 규제를 완화**함

- 이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 활용도** 높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입목(立木)·죽(竹)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가축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중 **소와 같이 방목 시 나무에 피해 없을 것으로 조사된 45종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설치 의무 면제**됨

- 다만, 말, 면양, 염소 등 **입목 훼손 우려가 있는 7종에 대해서는 의무를 유지**, 이 외에도 사립·학교 수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공립 수목원으로 전환**될 경우, **조성 예정지 면적 기준 10ha 이상에서 2ha 이상으로 완화**되어 **공공 수목원을 확대·도모**함

 ※ 더 자세한 내용은 ['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제도] 붙임 참고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산림자원과]

○ 최근 산림청의 정책 변화는 전북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정책을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바임. 특히, 다음의 변화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 수목원·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시 **산림청장 사전 승인 절차가 사전 통보로 간소화**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지역 주도 산림정책을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는 도내 **다양한 산림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테마형 정원 조성 사업**들을 **더욱 실현 가능성 높게 진행**할 수 있게 함. 또한, **사립·학교 수목원의 공립수목원 전환 시 조성 예정지 면적 기준(10ha → 2ha) 완화**는 **공공 수목원 확대 도모**에 기여함

○ **농림어업 분야 규제 완화 및 활성화**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 중복 행위 제한 규정 삭제** 및 양식장·양어장 설치 면적 기준 완화(3,000㎡ 미만 → 5,000㎡ 미만)는 **도내 양식·양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 또한,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입목 보호시설 설치 의무 합리적 조정(45종 면제)은 **친환경 축산과 산림 경영의 조화**를 추구하는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도민 산림 복지 증진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

·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의 산림 휴양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현재 **전북자치도 내에는 총 18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이며, 이는 국립 5개소, 공립 12개소, 사립 1개소로 구성됨. 또한 4개소는 현재 조성 중임 [참고2]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 내 자연휴양림 방문객은 최근 5년간 16.8% 증가**하는 등 **산림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전북자치도는 **총 174억 원을 투자**하여 **4개 휴양림 신규 조성 및 7개 기존 휴양림 보완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교육·치유 기능의 복합 산림복지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한 적 있음[1)]

·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산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함. 마지막으로, **나무병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치**는 전문성을 갖춘 등록된 나무병원만 활동하도록 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목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

○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산림청의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산림 분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2개 공립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각 시·군 조례에 따라 다름. 특히, **데미샘자연휴양림**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장료가 무료**임.
>
> 반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처럼 성인 기준 **2천원의 입장료**가 부과되는 곳도 있으며, 이번 **산림청의 정책 변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됨. 참고로, 휴양림 입장료 와는 별개로 숙박시설, 야영장, 편의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됨

1) 전북자치도, 자연휴양림 확대로 도민 힐링 라이프 업그레이드 (전북자치도 보도자료, 20250214)

참고1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 제도 (산림청, '2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수목원·정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정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정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목적, 위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6.21. 시행)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2.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범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함	o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7.1. 시행)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3. 나무병원 유사 명칭사용 금지	o < 신 설 >	o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6항 o 이를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 제54조(벌칙) 제5항	「산림보호법」 ('25.6.4. 시행)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4.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시 평가단 전문가 기준 완화	o 조경기술사 등 해당 자격분야 **10년이상** 종사자 o 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 등 해당 자격분야 **20년이상**	o 조경기술사 등 해당 자격 분야 **3년이상** 종사자 o 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 등 해당 자격분야 **10년 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사자 o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 등을 지도하는 **부교수 이상**의 사람	종사자 o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 등을 지도하는 **조교수 이상**의 사람 o **산림·조경 등 분야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신설)**	('25.6.25. 시행)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5.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정비	o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 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	o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 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 까지 제한 기준 삭제** o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해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25.7.8. 시행)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3)
6. 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입목·죽 보호시설 설치 의무 완화	o 「가축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 의무	o 소와 같이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하여는 나무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변경** o 단, 입목 훼손 우려 가축 7종만(말, 면양, 염소(유산양 포함),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의무 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25.7.8. 시행)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3)
7. 사립·학교 수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 공립수목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기준 완화	o 수목원 조성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목원 예정지의 면적은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ha 이상	o 수목원 조성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목원 예정지의 면적은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ha 이상 **(사립·학교수목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공립수목원이 되는 경우에는 2ha 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6.21. 시행)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831)

참고2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25.03. 기준)

□ 자연휴양림-18개소 (국 5, 공12, 사1 전국 대비 8.9%(전국 총 202개소)

명 칭	소유구분	위 치	고 시 일	지정면적 (ha)	개장연도	비 고
덕유산	국 유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91.05.15	744	1993	
회문산	〃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91.10.18	289	1993	
운장산	〃	진안군 정천면 휴양림길	'94.03.21	1,958	2000	
변 산	〃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09.12.31	37	2014	
신시도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	'07.11.19	120	2021	
와 룡	공 유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91.05.15	57.6	1996	
세 심	〃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93.02.12	101	1998	
성수산	〃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91.05.15	135	1996	임실군이전 (17.9.4.)
고 산	〃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94.07.21	672	1998	
흥부골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96.08.20	100	2002	
방화동	〃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99.05.11	101	2003	
무 주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07.08.20	31	2009	
데미샘	〃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01.02.02	230	2012	연구원
향로산	〃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2.05.23	268	2018	
용궐산	〃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15.12.29	164	2022	
함라산	〃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산38	'09.05.19.	339	2012	관리전환 (23.11.~)
선 암	〃	김제시 금구면 월전로	'19.09.03	36	2023	
남 원	사 유	남원시 갈치동	'91.05.15	34	1994	

※ 자연휴양림 조성중(4개소) : 정읍 내장산(공사중) *고창 구름골, 진안 군립, 부안 위도(기본 및 실시설계 중)

<출처 : 산림자원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공시자료>

산림청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2025년 하반기 산림분야 주요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제도 간소화) 수목원·정원 조성 절차 간소화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시 **사전 승인** → **사전통보**로 간소화

2. (지차체 자율성 제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 자율화

- 지자체 소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를 기존 법령 → 개선 조례로 결정 가능

3. (인력 수급 안정화) 정원 품질관리 평가단 참여 대상 확대

- 기술사 경력 10년 이상 → 3년 이상 , 기사 경력 20년 이상 → 10년 이상
 학교 지도자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상

4. (전문성 강화)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품질 제고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전문가에 한하여 **'나무병원'명칭 사용 허가**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의 중복 행위제한 규정 삭제 등 7개 달라지는 산림정책 시행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



3.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만 19~34세 청년 1.5만 가구 대상, 노동·주거·교육 등 8개 분야 조사
◇ 청년의 삶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축적하여, 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지원

1. 청년 가구 일반현황

□ (가구유형)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이 가구주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

구분	합계 (%)	청년 가구주 청년 가구의 청년						비청년 가구주 청년 가구의 청년			
		소계	청년 1인	청년 부부	청년 +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소계	부모 + 미혼 청년	부모 + 기혼 청년	기타
'22년	100.0	42.9	22.6	7.2	6.0	3.6	3.5	57.0	53.3	0.4	3.3
'24년	**100.0**	**51.3**	**23.8**	**8.5**	**6.5**	**8.3**	**4.1**	**48.7**	**45.7**	**0.3**	**2.7**

○ (가구원 수) 3인(26.5%), 4인(25.6%), 1인(23.8%), 2인(18.2%) 順

구분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2년	100.0	22.6	17.5	28.8	25.5	5.6
'24년	**100.0**	**23.8**	**18.2**	**26.5**	**25.6**	**5.8**

○ (혼인상태) 미혼 81.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9.0%

구분	합계(%)	미혼	배우자 있음	이혼·별거·사별
'22년	100.0	81.8	17.5	0.7
'24년	**100.0**	**81.0**	**18.3**	**0.7**

□ (취약가구 청년) 한부모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3.6%, 자립준비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0.7%

구분	합계(%)	한부모 가구 청년	자립준비청년 가구 청년	해당 없음
'22년	100.0	1.4	0.3	98.3
'24년	**100.0**	**3.6**	**0.7**	**95.7**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중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1.6%

구분	합계(%)	현재 수급	과거 수급경험	해당 없음
'22년	100.0	0.9	1.9	97.2
'24년	**100.0**	**1.6**	**3.3**	**95.2**

□ (가족돌봄 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청년은 1.5%이며, 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 돌봄 청년은 0.6%로 '22년과 유사

구분	합계(%)	돌봄 필요 가구원 있음			돌봄 필요 가구원 없음
			주돌봄자	주돌봄자 아님	
'22년	100.0	-	0.6	-	99.4
'24년	**100.0**	**1.5**	**0.6**	**0.9**	**98.5**

2. 경제

□ (생활비) 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수도권 220만원 > 비수도권 206만원), 그 비중은 식료품비(80만원),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통신비(14만원) 順

구분		총 생활비 (만원)	식료품비	교통비	오락·문화	통신비	주거비 (월세)	교육비
전체		**213**	**80**	**22**	**18**	**14**	**13**	**10**
지역별	수도권	220	82	21	19	14	14	11
	비수도권	206	77	22	16	14	12	10

※ ('22년) 소비지출(재화·용역) +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 등) → ('24년) 소비지출

□ (소득) 청년 개인 평균소득은 2,625만원(수도권 2,752만원 > 비수도권 2,472만원)

구분		총 소득 (만원)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22년		2,162	2,048	19	71	25
'24년		**2,625**	**2,451**	**34**	**94**	**45**
지역별	수도권	2,752	2,594	30	89	38
	비수도권	2,472	2,279	39	100	53

□ (부채) 청년 개인 평균부채는 1,637만원이며, 이 중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원으로 가장 많음

구분	총 부채 (만원)	주택 관련 부채	자산투자 위한 부채	학자금 부채	생활비 부채
'22년	1,172	823	36	58	32
'24년	**1,637**	**1,166**	**73**	**68**	**35**

□ (재산) 청년 개인 평균재산은 5,012만원

구분	총 재산 (만원)	금융자산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기타 * 소유한 거주주택 제외
'22년	-	1,415	259	25	760
'24년	**5,012**	**1,378**	**240**	**28**	**795**

※ '22년에는 재산 총액은 조사하지 않음

3. 노동

□ (경제활동) 취업자 비율은 67.7%, 세금공제 전 월소득은 266만원

○ 월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288만원>242만원),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음(274만원>255만원)

구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세금 공제 전 소득(만원)
		합계(%)	예	아니오	
'22년		100.0	67.4	32.6	251
'24년		**100.0**	**67.7**	**32.3**	**266**
성별	남성	100.0	67.5	32.5	288
	여성	100.0	67.9	32.1	242
지역별	수도권	100.0	69.3	30.7	274
	비수도권	100.0	65.8	34.2	255

○ (종사상 지위 '24년 신규) 임금근로자는 90.7%이며, 그 비중은 상용근로자가 70.7%로 가장 많고, 임시근로자(14.3%), 일용근로자(5.8%) 順

- 고졸 이하 청년이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중이 매우 낮음(63.3%<80.1%)

구분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00.0**	**70.7**	**14.3**	**5.8**	**2.9**	**5.6**	**0.8**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63.3	14.6	7.5	4.7	8.8	1.2
	대학 재학·휴학	100.0	18.4	53.7	21.4	2.7	2.5	1.4
	대학 졸업 이상	100.0	80.1	8.6	3.0	2.4	5.1	0.6

○ (계약기간)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율은 76.2%로 가장 많고, 1년 이상(16.3%), 1년 미만(6.8%), 1달 미만(0.7%) 順

구분	합계(%)	정하지 않음	1년이상	1달~1년미만	1달미만
'22년	100.0	68.7	16.5	13.1	1.7
'24년	**100.0**	76.2	16.3	6.8	0.7

○ (재직기간)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이 39.7%로 가장 많고, 1~3년 미만(32.3%), 1년 미만(28.1%) 順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35개월

구분	합계(%)	재직기간			평균 근속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22년	100.0	35.6	31.7	32.7	31.6개월
'24년	**100.0**	**39.7**	**32.3**	**28.1**	**35.0개월**

□ (근로형태) 취업자 중 전일제(주 36시간 이상) 80.4%, 시간제 19.6%

○ 남성이 여성보다 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음(83.9%>76.5%)

구분		합계(%)	전일제	시간제
'22년		100.0	78.0	22.0
'24년		**100.0**	**80.4**	**19.6**
성별	남성	100.0	83.9	16.1
	여성	100.0	76.5	23.5

○ (추가근로) 시간제 근로 청년 중 추가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32.9%, 추가 근로 희망 청년 중 지난주 실제 구직 경험이 있는 청년은 46.3%

구분	합계(%)	추가근로 구직경험 있었음	추가근로 구직경험 없었음
'22년	100.0	45.4	54.6
'24년	**100.0**	**46.3**	**53.7**

○ (복수 일자리) 취업자 중 복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5.5%이며, 이 중 2개라는 응답이 88.0%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복수 일자리 해당 여부		복수 일자리 개수	
		예	아니요	2개	3개 이상
'22년	100.0	3.9	96.1	89.9	10.1
'24년	**100.0**	**5.5**	**94.5**	**88.0**	**12.0**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74.0%가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나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14.7%, 미대상 11.4%

구분	합계(%)	받음	받지 않음	미대상
'22년	100.0	70.6	15.0	14.5
'24년	**100.0**	**74.0**	**14.7**	**11.4**

□ (구직경험) 미취업 청년 중 지난 4주내 구직 경험이 있었다는 비율은 14.0%,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6.5개월

구분	구직 경험			구직활동 기간
	합계(%)	있음	없음	
'22년	100.0	13.2	86.8	4.8개월
'24년	**100.0**	**14.0**	**86.0**	**6.5개월**

○ 비구직자 중 직장을 원하지 않은 청년은 92.4%, 지난 주 활동상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34.8%로 가장 많고, 쉬었음(27.5%), 취업준비(13.3%) 順

구분	합계 (%)	정규교육 기관통학	쉬었음	취업 준비	육아	가사	취업 학원, 기관 통학	군입대 대기	진학 준비	질병 요양	입시학원 통학	기타
'22년	100.0	30.8	18.9	18.8	8.7	3.6	7.3	2.9	2.6	0.8	1.4	4.2
'24년	**100.0**	**34.8**	**27.5**	**13.3**	**8.7**	**4.6**	**4.4**	**2.2**	**2.1**	**1.2**	**1.0**	**0.1**

○ 비구직자 중 직장을 원한 청년은 7.6%, 지난 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0.0%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	원하는 일자리 없을것 같아서	일자리 없을것 같아서	능력 부족	여성, 장애인 등 차별	취업 준비 중	육아	가사	건강상 이유	당분간 쉬고 싶어서	기타
'22년	100.0	22.0	4.6	6.9	0.4	47.1	4.9	0.2	1.7	8.3	3.9
'24년	**100.0**	**30.0**	**1.7**	**12.0**	**0.0**	**36.2**	**7.5**	**0.3**	**2.4**	**9.7**	**0.2**

○ (이직·구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은 임금이 57.9%로 가장 높으며, 고용안정성(9.9%), 근로시간(7.6%), 장기적 진로설계(5.4%) 順

구분	합계(%)	임금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장기적 진로설계	휴일 (주5일)	회사전망	정규직	복지수준	기타
'22년	100.0	48.5	12.8	7.2	8.4	3.3	4.2	4.5	4.0	7.1
'24년	**100.0**	**57.9**	**9.9**	**7.6**	**5.4**	**3.3**	**3.0**	**2.9**	**2.7**	**7.4**

□ (근로환경) 위험한 근로환경을 주2회 이상 경험한 빈도는 감정노동이 20.4%로 가장 많았고, 과중한 업무(14.2%), 성과·만족도 스트레스(8.1%) 順

구 분	합계(%)	거의 매일+ 주 2회 이상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연 1~2회	없음
감정노동	100.0	20.4	12.1	8.7	58.8
과중한 업무	100.0	14.3	17.9	17.3	50.6
성과·만족도 스트레스	100.0	8.1	10.0	13.3	68.5
무거운 짐·기계	100.0	5.6	6.0	7.5	80.9
혼자 일하는 괴로움· 무서움	100.0	5.6	6.4	8.7	79.3
안전· 보호장비 미비	100.0	2.8	3.4	5.5	88.3

※ '22년 조사와 보기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 곤란

○ (업무자율성) 일하는 순서(69.8%), 내용(59.6%), 양(56.3%), 시간(44.8%), 장소(34%) 順

구분		일하는 순서	일의 내용	일의 양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22년	정해진 범위에서 + 대체로 + 전적으로 내가 결정	69.0	56.8	53.3	45.3	33.1
	회사가 결정	31.0	43.2	46.7	54.6	67.0
'24년	**정해진 범위에서 + 대체로 + 전적으로 내가 결정**	**69.8**	**59.6**	**56.3**	**44.8**	**34.0**
	회사가 결정	**30.2**	**40.4**	**43.7**	**55.2**	**65.9**

○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14.3%

구분	합계 (%)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 없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괴롭힘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 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알지 못했다	모르겠다
'22년	100.0	50.5	12.5	6.7	3.6	26.8
'24년	**100.0**	**54.0**	**14.3**	**4.2**	**3.9**	**23.6**

4. 주거

□ (부모동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54.4%, **독립생활**하는 청년 45.6%

구분	합계(%)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22년	100.0	57.5	42.5
'24년	**100.0**	**54.4**	**45.6**

○ (독립계획)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38.0%**가 구체적 **독립 계획이 있다**고 응답, 그 이유는 **독립생활 희망**이 **47.4%**로 가장 많고, **통학·통근**(22.0%), **결혼·동거**(18.4%) 順

구분	합계(%)	독립계획이 있는 이유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통학·통근이 멀어서	결혼·동거 예정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춰서	가족간 불화	기타
'22년	100.0	40.7	26.1	17.2	14.0	0.9	0.0
'24년	**100.0**	**47.4**	**22.0**	**18.4**	**11.7**	**0.4**	**0.0**

○ (적정 독립시기) **자산형성한 이후** 응답이 **36.3%**로 가장 많고, 취업 후(26.4%), 결혼 후(17.9%) 順

구분	합계 (%)	어느 정도 자산형성 이후	취업 이후	결혼 이후	별도 계기없이 자산이 원할 때	만19세 이후	주거 독립 필요 없음	출산 이후
'22년	100.0	27.8	27.2	23.1	16.7	3.5	1.6	0.1
'24년	**100.0**	**36.3**	**26.4**	**17.9**	**13.2**	**4.2**	**1.9**	**0.0**

□ (주거선택 이유) 부모 비동거 청년이 현재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통근·통학이 39.2%로 가장 많고, 주거비(29.7%), 내부환경(8.3%) 順

구분	합계 (%)	통학·통근에 좋은 위치	주거비 저렴 (월세·보증금)	내부환경이 좋아서	친구·가족 등 지인 인접거주	개인공간이 보장되어서	기타
'22년	100.0	42.3	25.9	7.7	8.3	4.2	11.7
'24년	**100.0**	**39.2**	**29.7**	**8.3**	**7.3**	**3.6**	**12.0**

○ (지속거주 의향) 현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75.7% (수도권 78.9% > 비수도권 71.8%)

구분		합계(%)	계속 살고 싶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희망
'22년		100.0	73.1	26.9
'24년		**100.0**	**75.7**	**24.3**
지역별	수도권	100.0	78.9	21.1
	비수도권	100.0	71.8	28.2

○ (이주 의향) 타 지역 이주 의향은 24.3%, 그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가 31.6%로 가장 많고, 주거환경(20.2%), 문화환경(19.5%) 順

- 수도권은 더 나은 주거환경(30.7%) 응답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43.5%) 응답이 많음

구분		합계(%)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나은 문화환경	교육·보육·의료 환경 개선	통학통근 불편 해소	주거비 부담 경감	기타
'22년		100.0	29.6	18.1	20.5	11.5	12.0	4.3	1.3
'24년		**100.0**	**31.6**	**20.2**	**19.5**	**10.6**	**10.5**	**4.5**	**3.1**
지역별	수도권	100.0	18.5	30.7	14.3	9.8	17.0	6.8	2.8
	비수도권	100.0	43.5	10.6	24.2	11.3	4.6	2.3	3.4

□ (점유형태) 자가가 49.6%로 가장 많고(비수도권 54.6%>수도권45.5%), 전세(23.8%)·보증부 월세(23.8%) 順

구분		합계(%)	자가 (부모소유 포함)	전세	보증부 월세	기타
'22년		100.0	55.8	21.5	19.0	3.7
'24년		**100.0**	**49.6**	**23.8**	**23.8**	**2.8**
지역별	수도권	100.0	45.5	28.9	23.7	1.9
	비수도권	100.0	54.6	17.6	24.1	3.8

○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은 7.0%, 거주 의향은 71.7%

구분	합계 (%)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2년	100.0	5.6	94.4	63.2	36.8
'24년	**100.0**	**7.0**	**93.0**	**71.7**	**28.3**

□ (자가주택) 자가소유 필요성은 89.6%가 그렇다고 응답, 그 이유는 이사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기 위해서가 29.3%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원하는 기간 거주	자산증식·보전	임대료 압박 해소	내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분위기	기타
'22년	100.0	31.3	21.6	11.9	13.4	21.9
'24년	**100.0**	**29.3**	**20.3**	**14.0**	**12.9**	**23.6**

○ (주택가격)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평균은 4.5억원(중위값 3억원) 수준(수도권 6.3억 > 비수도권 2.8억)이며, 전세보증금 평균은 2.3억,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29백만원, 월세 평균은 41만원

구분(만원)		자가 주택가격	전세 보증금	보증부 월세 보증금	보증부 월세 월세
'22년		52,966	21,073	2,945	38
'24년		**45,211**	**22,585**	**2,891**	**41**
지역별	수도권	62,570	26,750	3,900	45
	비수도권	27,665	14,259	1,689	36

○ (주택자금) 주택구입·임차를 위한 자금조달은 부모님·친지가 61.7%로 가장 많고, 본인(24.2%), 정부·지자체(6.8%), 민간금융기관(6.3%) 順

구분	합계(%)	부모 또는 친지	본인자금	정부·지자체	민간금융	기타
'22년	100.0	63.7	21.5	5.3	6.5	3.0
'24년	**100.0**	**61.7**	**24.2**	**6.8**	**6.3**	**1.1**

□ (주택유형) 아파트가 56%로 가장 많고, 단독·다가구 주택(19.7%), 연립·다세대 주택(16.7%), 오피스텔(6.2%) 順

구분	합계 (%)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영업 겸용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기숙사, 향토학사	고시원	기타
'22년	100.0	62.8	28.3		6.6	1.3	0.4	0.5	0.1	0.0
'24년	**100.0**	**56.0**	**19.7**	**16.7**	**6.2**	**0.9**	**0.2**	**0.2**	**0.1**	**0.0**

○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에서 **반지하·지하·옥탑** 비율은 **0.9%**

구분	합계(%)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22년	100.0	0.7	0.0	0.1	99.1
'24년	**100.0**	**0.5**	**0.1**	**0.3**	**99.0**

□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 '24년 신규) **주거 정책**이 **45.7%**로 가장 높고, **일자리 정책**(33.5%), **복지·문화 정책**(14.1%) 順

합계(%)	주거 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문화 정책	교육 정책	참여권리 정책
100.0	**45.7**	**33.5**	**14.1**	**5.5**	**1.2**

○ (**주거정책**) 현재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이 **31.3%**로 가장 많고, **전세자금대출**(25.0%), **월세 등 주거비지원**(20.7%), **공공임대**(14.9%) 順

구분	합계(%)	주택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거비지원	공공임대공급	민간임대 관리감독	기타
'22년	100.0	41.0	23.9	17.3	11.8	4.2	1.9
'24년	**100.0**	**31.3**	**25.0**	**20.7**	**14.9**	**5.8**	**2.4**

5. 교육·훈련

□ (**고등학교**) **고졸 이하 청년**은 **17.4%**이며, 대학에 미진학한 이유는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어서** 응답이 **40.4%**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	청년 학력현황			대학 미진학 이유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대학 졸업 이상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어서	대학 가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대학 진학 성적 부족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졸업 후 생각해본적 없음	기타	고졸 학력 미취득
'22년	100.0	14.6	24.0	61.4	30.8	26.8	11.0	7.4	3.2	20.5	0.5
'24년	**100.0**	**17.4**	**20.9**	**61.7**	**40.4**	**25.4**	**11.7**	**10.9**	**5.7**	**5.1**	**0.9**

○ **졸업한 고교 유형**은 **일반고**가 **82.2%**로 가장 많고, **특성화고**(8.7%), **자율고**(3.7%), **마이스터고**(1.4%) 順

구분	합계(%)	일반고	특성화	자율고	마이스터	외국어·국제	예술·체육	과학·영재	기타
'22년	100.0	82.7	7.5	4.3	0.9	1.5	1.1	0.4	1.7
'24년	**100.0**	**82.2**	**8.7**	**3.7**	**1.4**	**0.8**	**0.8**	**0.3**	**2.2**

□ (대학교) 대학생(졸업포함)의 재학·졸업한 **학교 유형**은 **일반 4년제** 대학이 **78.2%**로 가장 많고, **2~3년제 대학**(18.8%), **사이버대학**(1.2%) 順

구분	합계 (%)	일반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사이버 대학	교육 대학	기능 대학	방송통신 대학	산업 대학	기타
'22년	100.0	76.7	20.5	0.6	0.9	0.4	0.4	0.1	0.4
'24년	**100.0**	**78.2**	**18.8**	**1.2**	**0.6**	**0.6**	**0.4**	**0.2**	**0.0**

○ 대학생(졸업포함)의 **전공 계열**은 **공학·건설**(18.0%), 보건·복지(14.6%), 예술·인문(14.4%), 경영·행정·법학(14.1%), 정보·통신(10.4%) 順

구분	합계(%)	공학, 제조, 건설	보건 및 복지	예술 및 인문학	경영 행정 법학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교육	자연과학, 수학, 통계학	농림어업, 수의학
'22년	100.0	18.2	14.8	14.6	14.4	8.6	7.5	7.5	7.4	6.3	0.8
'24년	**100.0**	**18.0**	**14.6**	**14.4**	**14.1**	**10.4**	**7.8**	**7.1**	**6.6**	**5.8**	**1.2**

□ (취업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은 **친구·선후배**(55.1%), **온라인·유튜브**(46.6%), **학교**(45.0%), **사설 기관**(42.3%), **부모·친인척**(35.7%), **공공기관**(24.4%) 順(중복 응답)

○ **도움을 받은 정도**는 **친구·선후배**(68.4%), **온라인·유튜브**(66.2%), **사설기관**(63.1%), **부모·친인척**(60.2%), **학교**(59.7%), **공공기관**(53.5%) 順

구분		친구·선후배	온라인·유튜브	학교	사설기관	부모·친인척	공공기관
'22년	경험	43.6	32.7	48.2	33.5	38.9	21.0
	매우 도움+약간 도움	58.6	50.6	49.5	51.1	54.9	29.5
'24년	**경험**	**55.1**	**46.6**	**45.0**	**42.3**	**35.7**	**24.4**
	매우 도움+약간 도움	**68.4**	**66.2**	**59.7**	**63.1**	**60.2**	**53.5**

□ (자기계발비) **최근 1년간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지출 비용이 있는 청년의 자기계발비는 월 평균 **44.5만원**

※ '22년에는 전체 청년의 자기계발비에 대해 조사하여 직접적인 비교 곤란

□ (교육·훈련) **직업훈련**(22.6%), 취업준비 비용지원(19.3%), 어학(14.6%) 順

○ **고졸 이하**는 **직업훈련**, **대학 재학·휴학**은 **취업준비 비용지원**이 가장 많음

구분		합계(%)	직업 훈련	취업 준비 비용 지원	어학	고용 상담 서비스	창업 교육	원치 않음
전체		**100.0**	**22.6**	**19.3**	**14.6**	**12.1**	**9.9**	**21.6**
학력별	고졸 이하	100.0	26.3	19.0	6.3	8.8	13.5	26.1
	대학 재학·휴학	100.0	19.5	21.4	20.1	17.4	7.4	14.2
	대학 졸업 이상	100.0	22.5	18.7	15.0	11.3	9.7	22.8

※ '22년 조사와 보기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 곤란

6. 건강

□ (건강인식) 평소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61.1%(남 65.7% > 여 56.1%)

구분		합계(%)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매우 좋음	좋음			
'22년		100.0	54.5	10.6	43.9	38.4	6.6	0.5
'24년		**100.0**	**61.1**	**14.4**	**46.7**	**31.7**	**6.7**	**0.4**
성별	남성	100.0	65.7	17.7	48.0	28.1	5.8	0.5
	여성	100.0	56.1	10.8	45.3	35.8	7.8	0.4

○ (활동제한) 건강·장애로 활동이 제한되는 청년은 2.9%이며, 이유는 정신적 문제(44.7%), 근골격 질환(30.8%), 소화기 질환(19.4%) 順(중복 응답)

우울·불안 정신문제	근골격질환	소화기 질환	기타
44.7	30.8	19.4	5.2

※ '22년에는 활동제한 여부만 조사하고 이유는 조사하지 않음

○ (흡연) 청년들의 흡연율은 23.5%(남 37.7% > 여 7.7%)

구분		합계(%)	흡연	비흡연
'22년		100	20.1	79.9
'24년		**100**	**23.5**	**76.5**
성별	남성	100	37.7	62.3
	여성	100	7.7	92.3

○ (음주) 최근 1년간 음주빈도는 월 2~4회 정도가 33.5%로 가장 많음

합계(%)	최근 1년간 안 마심	월 1회 미만	월 1회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마신 적 없음
100.0	12.2	16.9	16.5	33.5	13.4	2.3	5.2

※ '22년 조사와 보기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 곤란

○ (운동) 규칙적 운동실천율(주3회 이상)은 33.4%이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20.9%

구분	합계(%)	주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22년	100	32.6	21.5	11.1	28.6	12.4	26.3
'24년	**100**	**33.4**	**23.7**	**9.8**	**27.8**	**17.9**	**20.9**

○ (식사) **가족**과 식사가 **52.4%**로 가장 많고,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22.9%**

구분	합계(%)	가족	가족 外 친구 등	혼자
'22년	100.0	55.2	24.1	20.6
'24년	**100.0**	**52.4**	**24.7**	**22.9**

- **외식·배식** 빈도는 **월 3~4회** 정도가 **50.6%**로 가장 많고, 주 3~4회 정도(29.1%), 거의 안했다(10.3%) 順

합계(%)	거의 매끼니	일 1회	주 3~4회	월 3~4회	거의 안했다
100.0	**2.2**	**7.8**	**29.1**	**50.6**	**10.3**

※ '22년 조사와 보기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 곤란

□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9%**

○ **여성**이 남성보다(22.5%>17.5%),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위험이 높게 나타남**

구분		합계(%)	매우 그렇다+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년		100.0	20.2	2.4	17.8	48.7	31.1
'24년		**100.0**	**19.9**	**2.5**	**17.4**	**50.5**	**29.6**
성별	남성	100.0	17.6	2.1	15.4	51.7	30.7
	여성	100.0	22.5	2.9	19.6	49.2	28.3
연령별	19세-24세	100.0	22.2	2.7	19.5	50.8	27.0
	25세-29세	100.0	19.3	2.6	16.7	51.0	29.7
	30세-34세	100.0	18.3	2.1	16.2	49.7	32.0

□ (소진[번아웃]) 최근 1년간 **소진 경험** 비율은 **32.2%**, 그 이유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많고,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順

○ **연령이 낮을수록** 진로불안의 이유로, **연령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회의감 및 일과 삶의 불균형의 이유로 소진이 발생하는 경향

구분		합계(%)	진로불안	업무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일과 삶 불균형	일에 비해 보상 부족	일에 대한 보람 부족	기타
'22년		100.0	37.6	21.1	14.0	12.4	7.3	4.7	2.9
'24년		**100.0**	**39.1**	**18.4**	**15.6**	**11.6**	**9.9**	**5.0**	**0.4**
연령별	19세-24세	100.0	54.8	16.9	11.6	6.8	5.4	4.5	0.1
	25세-29세	100.0	41.5	16.3	17.0	11.1	9.3	4.6	0.3
	30세-34세	100.0	22.3	22.2	17.8	16.6	14.6	5.9	0.7

□ (정신건강)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9%**가 있다고 응답

○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상 유병률(10.7%>7.2%)과 자살 생각 경험(3.9%>2.0%)이 **더 많음**

○ **고졸 이하 집단**이 전체 평균보다 우울증상 유병률(11.8%>8.8%)과 자살 생각 경험(4.7%>2.9%)이 **더 많음**

구분		우울증상 유병률	자살 생각 경험
'22년		6.1	2.4
'24년		**8.8**	**2.9**
성별	남성	7.2	2.0
	여성	10.7	3.9
학력별	고졸 이하	11.8	4.7
	대학 재학·휴학	6.4	2.0
	대학 졸업 이상	8.8	2.7

○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6.3%**, 그 이유는 **비용부담**이 **38.6%**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비용부담	심리적 거부감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시간부족	혼자 가기 어려워서	주변에 상담 받을 곳없음	주위 시선·반대 때문	기타
'22년	100.0	27.5	18.9	15.6	20.0	4.1	3.4	3.8	6.7
'24년	**100.0**	**38.6**	**17.7**	**15.3**	**11.7**	**6.7**	**5.5**	**4.3**	**0.2**

□ (약물) **평생 사용경험**이 있는 **약물**은 **식이·체중 조절 약물**(5.1%), **수면제**(4.2%), **신경안정제**(4.2%) 順(중복 응답)

구분	식이·체중조절 약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22년	-	3.8	4.3	1.0	-
'24년	**5.1**	**4.2**	**4.2**	**1.2**	**1.0**

□ (피임 '24년 신규) 성관계시 **항상 피임**하는 비율은 **41.9%**

합계(%)	항상한다	대부분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 않는다
100.0	**41.9**	**38.6**	**13.5**	**6.1**

□ (미충족 의료)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3.3%로, 주된 이유는 시간 부족(48.9%), 의료비 부담(36.6%) 順

구분	합계(%)	시간 부족	의료비 부담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 할 지 몰라서	혼자서 가기 어려워	기타
'22년	100.0	58.1	23.7	4.5	7.6	3.6	2.5
'24년	**100.0**	**48.9**	**36.6**	**5.9**	**5.4**	**2.0**	**1.2**

7. 관계 · 참여

□ (도움집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주로 가족, 지인 順(중복 응답)

○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은 주로 가족, 공공기관, 지인 順

구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가족(친척)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없음	가족(친척)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없음
'22년	큰 돈 필요	92.8	33.5	10.7	2.0	3.3	68.8	8.5	18.7	1.5	2.4
	생활비 부족	93.4	33.3	5.1	1.0	2.3	72.8	10.4	13.7	0.9	2.2
	본인·가족이 아플때	94.8	41.1	6.6	2.1	1.2	73.6	10.8	12.7	1.4	1.5
	우울 또는 스트레스	76.5	66.0	6.1	4.0	2.2	46.0	39.2	9.2	2.8	2.7
	차별·고충·갈등	77.4	53.3	23.5	5.0	3.4	46.1	20.5	28.0	2.5	2.9
'24년	**큰 돈 필요**	**82.6**	**17.5**	**7.5**	**1.5**	**9.9**	**71.5**	**5.1**	**16.4**	**1.4**	**5.7**
	생활비 부족	**84.4**	**20.2**	**3.2**	**0.9**	**7.3**	**73.8**	**7.5**	**12.4**	**1.0**	**5.3**
	본인·가족이 아플때	**85.6**	**24.3**	**4.7**	**1.5**	**5.6**	**72.7**	**10.3**	**12.1**	**1.1**	**3.8**
	우울 또는 스트레스	**62.2**	**55.3**	**3.7**	**2.3**	**8.1**	**43.6**	**40.5**	**8.6**	**1.8**	**5.5**
	차별·고충·갈등	**60.9**	**46.0**	**16.1**	**3.8**	**8.5**	**42.8**	**26.0**	**23.7**	**2.3**	**5.2**

□ (여가) 경험이 꼭 필요한 여가활동은 여행이 34.9%로 가장 많고, 스포츠(23.2%), 문화·예술(17.5%), 동호회(13.8%) 順

구분		합계(%)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할 필요없다
'22년	2~3일 정도의 여행	100.0	44.0	53.2	2.8
	스포츠 활동	100.0	30.5	63.3	6.2
	문화예술 활동	100.0	24.3	67.2	8.5
	단체·동호회 활동	100.0	15.0	65.4	19.6
'24년	**2~3일 정도의 여행**	**100.0**	**34.9**	**59.4**	**5.7**
	스포츠 활동	**100.0**	**23.2**	**67.4**	**9.3**
	문화·예술 활동	**100.0**	**17.5**	**71.7**	**10.9**
	단체·동호회 활동	**100.0**	**13.8**	**70.8**	**15.4**

○ 지난 1년간 **문화·여가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시간 부족이 제일 높음**

구분		합계(%)	시간부족	경제적 부담	함께 할 사람 없음	공간, 지리적 문제	경험, 지식, 정보 부족	할 필요 없음
'22년	문화 예술	100.0	45.1	17.8	5.6	2.9	10.8	17.9
	스포츠	100.0	48.4	16.9	8.8	3.1	6.2	16.5
	여행	100.0	49.4	29.6	7.2	2.8	2.1	8.9
	동호회	100.0	33.1	10.1	8.9	1.9	11.3	34.7
'24년	**문화 예술**	**100.0**	**35.0**	**17.0**	**8.2**	**4.4**	**11.9**	**23.6**
	스포츠	**100.0**	**37.5**	**15.5**	**12.4**	**3.7**	**7.6**	**23.4**
	여행	**100.0**	**36.8**	**32.9**	**9.8**	**2.7**	**2.8**	**15.1**
	동호회	**100.0**	**31.1**	**12.2**	**13.2**	**3.4**	**10.2**	**30.0**

□ (**고립·은둔**)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은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 ('22년 2.4%(임신·출산·장애 등 0.4% 제외)), 그 중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은 **0.9%**

* △취미만을 위해 외출,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 △방에서만 나옴, △방도 거의 안나옴

구분	합계(%)	매일 외출	주 3~4일	자주 외출	가끔 외출	취미만 위해외출	인근 편의점	방에서만 나옴	방도거의 안나옴
'22년	100.0	70.7	9.1	6.3	11.0	1.4	1.3	0.1	0.0
'24년	**100.0**	**67.9**	**8.6**	**6.9**	**10.1**	**2.5**	**3.1**	**0.5**	**0.4**

○ 그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2.8%**로 가장 높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順

구분	합계(%)	취업어려움	인간관계어려움	학업중단	진학실패	기타
'22년	100.0	29.0	8.3	6.5	1.2	42.8
'24년	**100.0**	**32.8**	**11.1**	**9.7**	**2.4**	**43.9**

□ (**정치**) 정치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27.1%**(남 30.6% > 여 23.2%)

* '22년에 대통령선거(3월), 지방선거(6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구분	합계(%)	관심 있음			관심 없음		
			매우 관심 있다	약간 관심 있다		그다지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22년	100.0	37.5	4.8	32.7	62.5	40.0	22.5
'24년	**100.0**	**27.1**	**2.9**	**24.2**	**72.9**	**47.8**	**25.1**

8. 사회인식 · 미래설계

□ (**삶 인식**) 현재 삶에 대한 평가결과(0~10점), **만족도** 6.7점, **행복감** 6.8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 5.3점으로 나타남

구분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감	자유로운 선택	사회 신뢰 정도
'22년	6.72점	6.89점	6.93점	5.20점
'24년	**6.71점**	**6.80점**	**6.92점**	**5.26점**

○ (**갈등 인식**) **소득** 갈등(75.7%), **세대** 갈등(72.1%), **성별** 갈등(66.6%), **지역** 갈등(62.4%), **내·외국인** 갈등(47.1%)이 많다고 응답

구분		합계(%)	매우 많다 + 많은 편			없는 편	거의 없다
				매우 많다	많은 편		
'22년	부유층과 서민층	100.0	79.1	25.6	53.5	18.4	2.4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100.0	76.5	15.2	61.3	20.9	2.6
	남성과 여성	100.0	72.3	24.6	47.7	24.8	2.9
	수도권과 비수도권	100.0	63.4	15.6	47.8	32.5	4.1
	내국인과 외국인	100.0	53.0	9.2	43.8	40.9	6.1
'24년	**부유층과 서민층**	**100.0**	**75.7**	**23.1**	**52.6**	**20.4**	**3.9**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100.0**	**72.1**	**13.7**	**58.4**	**23.9**	**4.0**
	남성과 여성	**100.0**	**66.6**	**23.9**	**42.7**	**28.8**	**4.6**
	수도권과 비수도권	**100.0**	**62.4**	**16.3**	**46.2**	**32.4**	**5.2**
	내국인과 외국인	**100.0**	**47.1**	**7.0**	**40.1**	**45.1**	**7.8**

○ (**소득계층 인식**) 본인의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은 **중간층**이 **52.9%**로 가장 많고, **중하층**(30.9%), 중상층(9.5%) 順

구분	합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22년	100.0	4.7	26.5	56.5	11.6	0.7
'24년	**100.0**	**6.1**	**30.9**	**52.9**	**9.5**	**0.6**

□ (**바라는 삶의 요소**) **일자리**가 **95.9%**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94.7%), **소득·자산**(93%), **연애**(78.3%), **결혼**(74.4%) 順(중복 응답)

○ **남성**이 여성보다 **연애**(82.2%>74.1%), **결혼**(79.1%>69.3%), **출산·양육**(74.2%>63.1%)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

구분		원하는 일자리	인간 관계	높은 소득 많은 자산	연애	결혼	사회 기여	출산·양육	명예·권력	높은 학력
'22년		97.4	95.7	93.7	80.9	74.2	71.8	69.3	59.1	61.8
'24년		**95.9**	**94.7**	**93.0**	**78.3**	**74.4**	**71.8**	**69.0**	**62.2**	**60.8**
성별	남성	95.6	94.6	92.4	82.2	79.1	70.6	74.2	62.5	59.9
	여성	96.1	94.8	93.5	74.1	69.2	73.2	63.2	61.7	61.8

□ (결혼·출산)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결혼계획은 63.1%가 있다고 응답, 향후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59.3%가 있다고 응답

○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계획(67.8%>57.5%), 출산의향(65.1%>52.8%)이 더 높게 나타남

구분		합계(%)	결혼계획		출산의향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2년		100.0	75.0	25.0	63.3	36.7
'24년		**100.0**	**63.1**	**36.9**	**59.3**	**40.7**
성별	남성	100.0	67.8	32.2	65.1	34.9
	여성	100.0	57.5	42.5	52.8	47.2

□ (미래영향요소)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있어 저출생·고령화(92.2%), 기후변화(89.2%), 불평등(82.7%) 등이 영향 있다고 응답

구분		합계(%)	매우 영향 有 + 영향 有			영향 無	전혀 영향 無
				매우 영향 有	영향 有		
'22년	저출생·고령화	100.0	95.7	55.6	40.1	3.9	0.5
	기후변화	100.0	92.4	48.3	44.1	6.6	1.0
	불평등	100.0	90.1	25.8	64.4	8.9	1.0
	테러리즘(국제분쟁·통일)	100.0	25.8	56.1	56.1	16.0	2.0
	기술·산업구조 변화	100.0	90.1	31.5	58.6	9.1	0.8
'24년	**저출생·고령화**	**100.0**	**92.2**	**54.3**	**37.9**	**6.7**	**1.1**
	기후변화	**100.0**	**89.2**	**46.0**	**43.2**	**9.0**	**1.9**
	불평등	**100.0**	**82.6**	**20.9**	**61.7**	**15.3**	**2.0**
	테러리즘(국제분쟁·통일)	**100.0**	**79.7**	**29.1**	**50.6**	**17.4**	**2.9**
	기술·산업구조 변화	**100.0**	**77.7**	**24.8**	**52.9**	**19.7**	**2.7**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22년에 이어 두번째 조사임. 목표 표본은 만19~34세 청년을 포함하는 전국 15,000가구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15,098가구, 15,098명의 청년 응답이 활용되었으며, 8개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 전반을 살펴보았음

* △일반현황, △경제, △노동, △주거, △교육·훈련, △건강,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5년 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효율적인 정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3)」시 '17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023~2027)」 ''22년에 청년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조례에는 실태조사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는 상황임

○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5년 청년정책 소요예산은 91개 사업에 213,657백만원의 소요예산을 예정하고 있고, 핵심과제로 25개 사업 161,495백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음

< 청년정책 분야별 소요예산 >

(단위 : 건, 백만원)

분 야	사업수	예 산 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91	213,657	86,127	48,287	44,558	34,685	
1. 일자리	31	65,817	34,125	14,129	14,381	3,182	
2. 주거	7	64,909	16,834	9,989	10,658	27,428	
3. 교육	15	30,685	20,208	5,516	2,437	2,524	
4. 복지·문화	29	49,716	14,960	16,850	16,355	1,551	
5. 참여·권리	9	2,530	0	1,803	727	0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정책 분야별 핵심과제 현황 >

(단위:백만원)

분야	실 국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	도	시군	기타
	합계	25개	161,495	70,135	29,034	60,255	2,216
일자리 (5)	기업유치지원실	(확대)전북 청년 직무인턴	4,865	3,700	1,165	0	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014	1,504	258	1,035	217
		(확대)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	8,799	8,504	140	100	200
	농생명축산산업국	(확대)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3,099	16,109	2,097	4,893	0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스마트팜 건립	5,728	0	3,240	2,488	0
주거 (5)	건 설 교 통 국	(확대)공공임대 주택공급	33,995	6,567	0	27,428	0
		(확대)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5,000	0	2,000	3,000	0

분야	실 국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	도	시군	기타
	기 획 조 정 실	(확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600	3,800	1,140	2,660	0
	농생명축산산업국	(확대)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2,600	0	1,300	1,300	0
		(확대)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10,400	5,200	1,560	3,640	0
교육 (5)	기업유치지원실	(신규)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	2,300	1,400	130	240	530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확대)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1,703	0	511	1,192	0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3,360	0	2,550	450	360
	미래첨단산업국	(확대)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전북대, 군산대)	5,169	4,000	160	100	909
		(신규)첨단분야(반도체) 혁신 융합대학	10,650	10,200	450	0	0
복지 문화 (5)	기 획 조 정 실	(확대)전북 청년 함성패키지 지원	18,030	0	9,150	8,880	0
	복지여성보건국	(확대)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9,211	8,152	0	1,059	0
		(신규)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1,427	999	428	0	0
	문화체육관광국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	2,320	0	1,160	1,160	0
		(신규) 청년문화예술 자율기획사업	100	0	100	0	0
참여 권리 (5)	기 획 조 정 실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645	0	645	0	0
		(확대)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760	0	380	380	0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500	0	250	250	0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축제	120	0	120	0	0
	대외국제소통국	(신규)도내 청년 공익활동지원사업	100	0	100	0	0

○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22년 대비 1인 가구수는 증가였으며, 취약가구 청년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생활비(206만원) 중 식료품비(37.3%), 교통비(10.6%)에 지출하고 있으며, 오락·문화(7.7%) 통신비(6.8%), 주거비(5.8%), 교육비(4.9%)에 지출하고 있으나,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지출항목은 식비(83.1%), 쇼핑(31.8%), 교통비(27.9%)* 순으로 나타남

*퍼센트 값은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산출(중복응답 가능)

○ '24년 신규항목인 가장필요한 정책 지원은 주거 정책이 45.7%로 가장 높고, 일자리 정책(33.5%), 복지・문화 정책(14.1%) 순이었음

○ 이처럼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조사결과와 전북자치도의 청년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전국 조사와 다른 전북의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북자치도 청년

정책 사업 수립 및 시행시 실태조사 및 사업분석을 통하여 사업효과 및 지원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청년의 삶 실태조사」의 경우 매 2년마다 시행하고 '24년 실태조사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지출금액은 347,366천원이었고, 전남 순천시에서 수행한 「순천시 청년 삶 실태조사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은 20,425천원 이었음

○ 전북자치도에서는 매년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통하여 청년의 정착 지원 및 사업을 수행(91개 사업/213,657백만원)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전북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매 5년 마다 진행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청년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보임

○ 또한 전북자치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년 '전북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44,000천원/전북연구원)을 수행하면서 실태조사(9,500천원/(주) 현대리서치)를 진행하였음

○ 전북자치도에서도 청년기본법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같이 매 2년마다 수행하여, 청년의 삶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수립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청년들의 수요(수도권의 경우 더 나은 주거환경 - 30.7%, 타 지역 이주 의향 - 21.1%)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북 하동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청년주거타운, 청년 주택 보급 등을 통한 청년정착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착수 · · · '28년 본격 상용화(국토교통부)

◇ 3년간 총 321억원 투입, 실증노선에 수소 인프라(충전소, 검수시설 등) 구축

Ⅰ.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
* 차량 사양 : 출력 1.2MW, 최고속도 150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

□ (기간/비용) '25.4월 ~ '27.12월 / 총 321억원 (정부 200, 민간 121 억원)

□ (시행기관) 한국철도공사(주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코하이젠㈜, 한국교통대학교,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사업내용) 비전철 운행 노선에서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운행 시행

ㅇ 수소전기동차 실증 차량 제작 및 형식승인

ㅇ 충전소, 검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안전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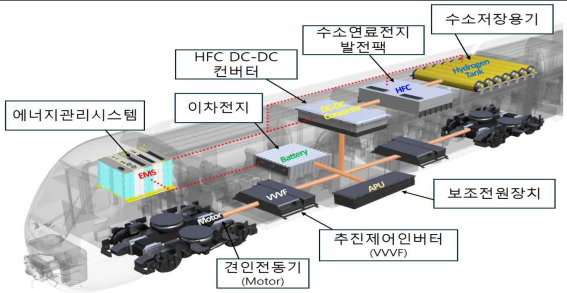
ㅇ 수소열차차량 기술기준, 관리·운영 규정, 제도 개선방안 등 마련

⇨ 실증 과정에서 보완 사항 도출·해소 후 상용화 및 운영 확대

□ (추진체계) 공공·민간 등 7개 기관에서 소관 분야별 실증 수행

(연구개발 주관) 한국철도공사

㈜우진산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코하이젠(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ㅇ 실증 차량 제작 ㅇ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	ㅇ 충전소, 검수시설 구축 ㅇ 안전성 및 접합성 검증	ㅇ 차량 기술기준 마련 ㅇ 법제도 분석 및 개정안 마련



수소전기동차 시스템 구성도



수소전기동차 외관

Ⅱ. 수소열차 도입 시 기대효과

□ (**에너지 비용 절감**) 디젤엔진 대비 **에너지 효율 2배 이상**

○ 효율 : **수소연료전지 36%**, 가솔린 내연기관 16%, 전기기관 21%

○ 비용* : **수소 1,107원/km**, 디젤 3,548원/km

* '30년 수소 평균공급 가격 4,000원/kg, 디젤동차 유류비 단가(평균) 3,548원/km 기준

□ (**탄소중립 실현**) 탄소 배출 제로(zero) **친환경 철도차량**

○ 현행 디젤열차 전량을 **수소열차로 대체될 경우**

- 미세먼지(PM10, PM2.5) **724톤/년 감축**
- 대기오염물질(CO, NO_x, SO_x, VOC, NH_3) **9,320톤/년 감축**

□ (**인프라 비용 절감**) **전차선**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불필요**

○ 일반철도 표준 공사비용 중 **전철화 비용은 18% 수준 차지**

- 복선전철(일반부) 전체 평균 공사비(노반, 궤도, 전기, 신호, 통신) 206.5억원/km 중 **전철화 비용은 37.3억원/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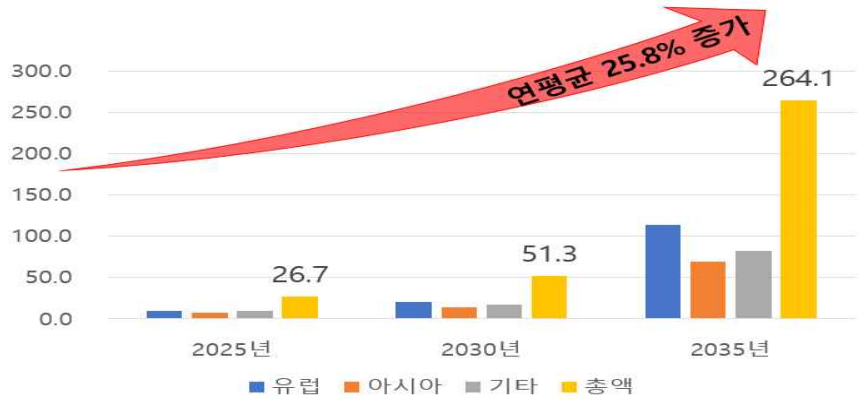
* 전철·전력 분야 유지보수 비용 연간 67.5백만원/km도 별도 절감 가능

□ (**수소생태계 조성**)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 지원

○ **주요 핵심부품**(수소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및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 산업 활성화로 수소자동차·철도 등 **수소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

□ (**세계시장 선점**)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급속히 성장 예상**

○ '25년 26.7억$ → '30년 51.3억$ → '35년 264.1억$ (연평균 25.8%)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청정에너지수소과]

○ 전북자치도는 '19년 '제1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였고, 이 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수소도시 지정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이룩함

○ 전북자치도의 '제1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고, 타 광역지자체에서 광역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또한 '24년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30)을 수립하였음

○ 수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예비수소전문기업)과 대학 내 수소인력 프로그램 등은 확보되었으나 수소기업의 양적 비율이 부족

- 수소전문기업 3개(전국 3% 비중, 8위/17개 시도) 참고 : 경기(31개), 경남(13개), 서울(12개), 부산(8개) 충남(8개) 순
- 수도권 제외 광역도 비교 : 경남(13개), 충남(8개), 전남(6개), 전북(3개)
- 수소산업실태조사 수소 기업현황(산업부, 2022) : 96개(3.4%, 11위/17개 시도)

<수소안전 및 기업육성 체계화 전략>

구분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북 자원	• 서남권/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 새만금신항 조성 중	• 현대차, 두산하이엑시움모터스 등 수소버스/트럭 국내 생산 1위 • 수소버스/트럭 핵심부품 기업 소재 (일진하이솔루스, 두산퓨얼셀 등) • 저장/활용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지정 • 모빌리티/연료전지 관련 지원기관 확보
1차 성과	• 소규모 수전해 생산기지 확보 •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E, 경제성 확보 필요성 확인		• 모빌리티 특화 지원센터 유치 • 국내 유일 저장/활용 특화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 상용모빌리티 국내 이니셔티브 확보
지역 경쟁	• 제주, 전남 등		• 울산, 경남 등
전북 장점	•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추진 중으로 미래 그린수소 생산 잠재력 우위		• 상용모빌리티에 특화된 기업, 지원기관, 기업유치 가능한 산업단지 등 관련 생태계 국내 최고 • 트럭/버스 이외 건설기계, 농기계 등 모빌리티 다각화 가능
전북 단점	• 수전해 관련 지원기관, 기업 부재로 단기적 산업생태계 조성 한계 •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지연으로 그린수소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 부족(현 시점)	• 저장운송 가능한 수소 생산량 미비 • 수소 저장, 운송 가능한 항만 부재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구분	생산	저장운송	활용
	• 수소 생산 시 도내에서 대규모 사용 가능한 혼소발전소, 수소전소발전 등 부재		
	⇓	⇓	⇓
특화 방향	• 재생에너지 조성과 연계 대규모 수전해 클러스터 조성 추진 • 단기적 소규모 수전해 실증, 실증 연계 지원인프라 구축	• 새만금신항 조성 연계 수소 저장운송 기반 확보	• 단기적 상용모빌리티에 특화 기업유치, 기업성장을 위한 기업수요 연계 프로젝트 추진

○ 전북자치도의 강점은 상용모빌리티에 특화된 기업, 지원기관, 기업유치 가능한 산업단지 등 관련 생태계 국내 최고의 수준이나 수소열차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및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반해 수소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수소트램 설치를 통한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는 수소트램을 추진하면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7억원을 확보했음

< 울산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 현황 >

□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 남구 무거동(신복교차로)
- ㅇ (**사업규모**) L=10.85km, 정거장 15개소, 트램(수소연료전지 방식)
- ㅇ (**총사업비**) 3,814억 원(국비$_{60\%}$ 2,288, 시비$_{40\%}$ 1,526)
- ㅇ (**사업기간**) 2021년 ~ 2028년
- ㅇ (**시 행 자**) 울산광역시

□ **추진경위**
- ㅇ '20. 9. :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국토부)
- ㅇ '23. 8. : 타당성 재조사 통과(B/C 0.85, AHP 0.535)
- ㅇ '23. 11.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4. 9, 울산시 주관)
- ㅇ '24. 5. : 주민공청회 개최(5.30.)
- ㅇ '24. 6. : 의회 의견 청취(6.12.)
- ㅇ '24. 8. : 기본계획(안) 승인 요청 제출(울산시 → 대광위)
- ㅇ '25. 1. : 총사업비 협의 완료(기재부)
- ㅇ '25. 2. : **기본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향후 계획**
- ㅇ 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목표연도(' 28년) 준공

○ 대전광역시는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공구 분할 발주와 지역업체 우대 방침을 정해 자본과 인력의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입찰 단계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최대 49% 이상으로 명시하고 하도급도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맡도록 권장하고 있음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 현황 >

□ **사업 개요**

- ㅇ 노선 : 서대전역4~대전역~대동5~정부청사4~유성온천4~서대전역4(본선 33.9㎞), 중리4~법동~동부여성가족원~연축(지선 3.9㎞), 관저4~진잠(지선 1.0㎞)
- ㅇ 규모 : 연장 38.8km(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ㅇ 사업비 : 15,069억 원(국비 60%, 지방 40%)
- ㅇ 사업기간 : 2014~2028년

□ **추진경위**

- ㅇ 2024. 2.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및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재부) 완료
- ㅇ 2024. 5. : 기본계획(변경) 승인(국토부 대광위)
- ㅇ 2024. 7. : 차량운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설치 계약 / 수소트램
- ㅇ 2024. 8. :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기재부)
- ㅇ 2024. 9. : 우선발주 5개 공구(1・2・7・10・13공구) 공사 발주
- ㅇ 2024. 10. : 기술제안 공구(12공구) 공사 발주
- ㅇ 2024. 11.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 승인(국토부 대광위)
- ㅇ 2024. 12. : 공사 착공(1・2・7공구)
- ㅇ 2025. 1. : 2개 공구(6・8공구) 발주
- ㅇ 2025. 2. : 13공구 착공
- ㅇ 2025. 3. : 10공구 착공, 5개 공구(3・4・5・9・14공구) 발주, 주민설명회 개최(1・2・7공구)
- ㅇ 2025. 5. : 2개 공구 착공(6・8공구)

□ **향후 계획**

- ㅇ 2025. 2분기 : 잔여공구(11공구) 및 차량기지 발주
- ㅇ 2025. 하반기 : 각 공구별 공사 추진
- ㅇ 2028. : 철도종합시험 운행 및 개통

○ 전주시에서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경우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벽교)의 9.5㎞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와

중앙정류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는 448.5억 원으로, 이 중 50%를 국비로 확보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청정수소 1번지, 수소경제 선도 전북”을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5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2025~2030)을 수립하였음

○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BRT사업은 주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및 중앙정류장 등 설치를 통하여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차량통행 및 많은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반하여 수소트램은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수소 트램은 저상형 구조로 제작돼 일반 승객은 물론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하며 전차선이 불필요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일반 트램·경전철 대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광법 통과와 함께 향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검토가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기존의 수소 상용차 산업의 강점과 수소 인프라 구축 노력을 바탕으로 수소 트램 산업에 진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수소 트램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발맞춰, 전북 또한 미래 친환경 도시 교통 시스템의 한 축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나아가 ‘15년 전북과 철도 클로스터 투자협약을 통하여 정읍에 철도회사가 ’20년 준공되어 간선형 전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수소 트램 개발을 위한 투자와 개발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관계부처 합동)

◇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Ⅰ. 검토 배경

□ 주요국들은 **지역발전**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각종 특구·산업클러스터**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 중

○ 과거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낙후지역** 위주로 지정했었으나 최근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도시권**내 **특구지정 사례**도 증가

< **각국의 특구제도 운영 사례** >

	▸ 제조업·탄광 등 산업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해 도입된 **기업지구**(Enterprise Zones)를 개발 장벽이 낮고 성장잠재력이 큰 **도심지역 중심**으로 **개편** 및 **재지정**
	▸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할수 있는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엄선·지원하는 '**총합특구**('11)' 및 '**국가전략특구**'(13) 도입
	▸ 주요 무역항과 **대도시권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면제·외투유치** 지원 및 **지역 클러스터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 '**자유무역시험구**'('13) **도입**

□ **우리나라** 역시 **'70년 '자유무역지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특구제도**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 **추진** 중

○ 다만, **각종 특구제도 난립**에 따른 **유사·중복 우려**가 존재하며 **정책효과성**이 **높지**않다는 **전문가 지적*** 다수

* 특구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23, 대한상의) : (잘 운영되고 있음) 8%, (보통) 48% (잘 운영되지 않음) 42%, (전혀 잘 운영되지 않음) 2%

□ 이러한 인식 하에 **특구제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4.3월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연구용역** 추진*

* '24년 경제정책방향('23.12월), 역동경제 로드맵('24.7월)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24.11월)

Ⅱ. 특구 · 산업클러스터 현황

□ **(개념)** 산업개발·지역활성화·외자유치 등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 내**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연구용역 보고서, 예정처 보고서를 포함한 **대다수 연구보고서**에서는 특구와 산업클러스터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

○ **개별법상 특구**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라 **국토 전역**에 광범위하게 **지정·운영**되는 **산업단지**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

□ **(제도 운영)**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특구·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54개)이 **'10년 이후**** **신설**

* 국토(25)·산업(18)·문체(9)·중기(8)·농식품(7)·해수(7)·과기(6)·환경(2)·복지부(2), 우주청(2), 산림청(1)
** 시기별 도입특구(개) : ('09년 이전) 33, ('10~'19년) 28, ('20년 이후) 26

○ **지정시** 개별법령에 따라 **세제**(37개), **재정**(67개), **규제특례**(40개) 등 지원

□ **(지정 현황)** **총 2,437개 지역*** 지정, **82.5%**(2,010개)가 **非수도권**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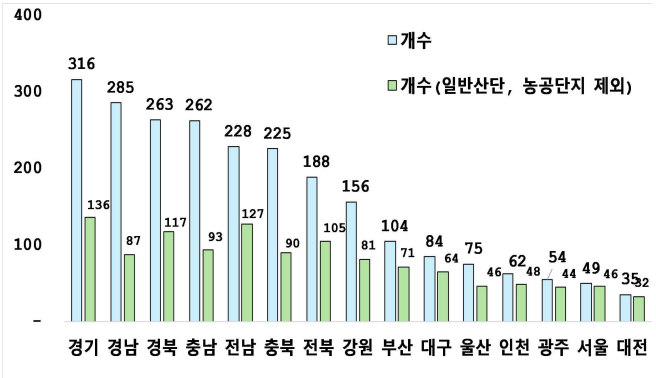
* 지자체가 한도내에서 자율지정 가능한 농공산단·일반산단 제외시에는 1,217개

○ **시·도별**로 **경기**(316개), **경남**(285개), **경북**(263개), **충남**(262개),순으로 **지정** 중이며, **서울**은 **49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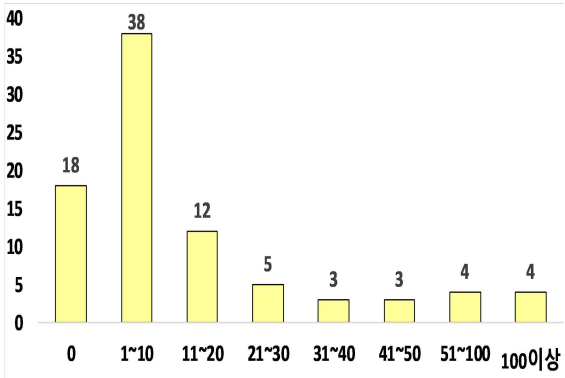
○ **특구별**로 **절반 이상**(50개)이 **1~20개 지역수준**으로 **지정 중**이나 **지정된 지역**이 **없거나*** **100개 이상 지역**에 **지정****한 **특구**도 **존재**

* 해양치유지구(해수부), 해양관광진흥지구(국토부), 종자산업연구단지(농식품부) 등 18개 특구
** 일반산단(국토부, 783개), 농공단지(국토부, 48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중기부, 175개), 생태산업단지(산업부, 108개)

< **지역별 특구지정 현황**(n=2,437, 1,217) >



< **특구별 지정지역 개수 분포**(n=87)>



Ⅲ. 현행 제도 평가

※ ❶「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예정처 보고서 및 ❷「특구제도 합리화방안」 기재부 연구용역 주요내용 요약

◇ '10년대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증가하면서 유사·비활성화 특구,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특구간 역할조정 및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

1 **(유사·비활성 특구)** 유사·중복 특구 증가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 다수** 발생

○ 지원목적·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상당수 존재하여 **제도취지**인 '**예외적 혜택 부여**를 통한 **선택과 집중**' 효과 창출에 한계

○ **정책수요**가 아예 **없거나**(지자체 신청 無)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정사례**가 없이 **사실상 死문화**된 **특구***도 **다수** 존재

* 예) 마리나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인쇄문화산업단지 등 14개 특구

< **주요 특구 현황**(출처: 예정처 보고서 및 연구용역) >

특구	목적	지원대상	주요 지원내용
경제자유구역 (산업부)	▸ **외국인 투자유치** ▸ **지역균형발전**	▸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 **국내기업**	▸ **특례**(노동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 **복합 도시개발** ▸ **조세감면**(관세, 지방세)
자유무역지역 (산업부)	▸ **외국인 투자유치** ▸ **무역진흥** ▸ **물류기지 육성**	▸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 **수출기업**	▸ **특례**(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수출입 승인특례 등) ▸ **조세감면**(부가가치세, 지방세)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부)	▸ **외국인 투자유치**	▸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 **임대료 감면** ▸ **조세감면**(관세, 취득세, 지방세)
연구개발특구 (과기부)	▸ **연구개발·기술사업화**	▸ **산·학·연** ▸ **사업시행자**	▸ **기술기업, 외투기업 등 조세감면**(법인세, 지방세) ▸ **R&D·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실증특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과기부)	▸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기술사업화**	▸ **산·학·연** ▸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 **외투기업 등 조세감면**(법인세, 지방세) ▸ **R&D·사업화 지원** ▸ **기초과학 인프라 구축**
첨단과학기술단지 (국토부)	▸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도모**	▸ **지역 산·학·연** ▸ **사업시행자**	▸ **조세감면**(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 **인프라 구축 지원**
첨단투자지구 (산업부)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생산**	▸ **입주기업** ▸ **사업시행자**	▸ **부담금 감면** ▸ **지투보조금 가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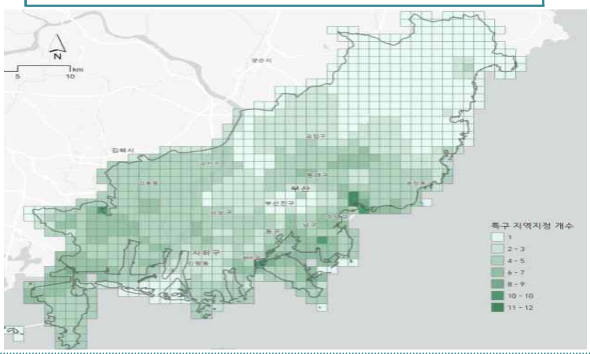
2 (과잉지정) 불분명한 원칙에 따른 특구지정으로 비효율성 증대

○ 특구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되는 **지역** 증가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지원** 애로

* 예) 특구 지정한도(면적·지정개수), 입지(가능구역), 사업타당성(사업효과 등) 등

○ **경제적 효과**보다 **지역간 형평성**에 중점을 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입지**에 **특구**를 **지정**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

<예시> 부산시 특구 지정사례



■ **부산시 전역이 특구로 중첩 지정**

- **시 면적**(770㎢)**의 2.4배**(1,824㎢)가 **특구** 지정(26종, 100개 이상), **최대 12개 중첩**

■ **각종 특구**를 통해 주력산업(항만·물류, 바이오, 첨단반도체,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등) 지원

- 다만, **바이오·지능정보 서비스산업 비중**은 **'10년** 대비 **'20년 정체**(예정처)

3 (관리체계 미흡) 총괄 거버넌스가 마련되지 않아 특구간 역할 조정에 한계가 있으며 특구별 성과관리도 미흡

○ 개별 **특구제도**가 **소관부처 위주**로 **운영**되어 부처간 **특구운영 현황 파악** 및 **선순환**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 수립·조율**에 한계

○ **성과평가** 및 **환류**(지정해제 등) **제도**가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 특구 **지정효과 분석** 및 **저성과 특구관리 어려움**

* 성과관리제도가 없는 특구 45개, 시정·지정해제 요건이 없는 특구 15개

** 예) 특구의 실질적 효과보다 매출액·투자규모 등 형식적 성과 위주로 평가

【참고】 예정처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평가」('24.11월) 정책제언

1 **특구**(지역 산업클러스터) **과다지정 해소** 및 **지원정책 개선**

❶ **(과다·유사지정 해소) 입지선정시** 지역 **산업클러스터간 차별성 확보** 등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

❷ **(인센티브 확대) 클러스터**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

2 **특구**(지역 산업클러스터) **운영·관리체계 수립**

❶ **(운영체계 수립) 산업클러스터 관련 범부처 실태조사 운영** 및 특구간 조정을 위한 **총괄 거버넌스** 수립

❷ **(성과관리 체계화) 지역클러스터**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환류** 등 **성과관리체계 수립** 필요

Ⅳ. 향후 계획(안)

□ 상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구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전문가간 논의 등 **제도개선** 지속 강구

○ **부처별**로 **소관특구**에 대한 **성과평가**(예: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을 활용해 **제도개선 필요성 優先** 검토

○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심층평가***(개별사업 또는 사업群) 등을 거쳐 **제도정비** 및 **특구간 연계** 등 추진

* 예) 재정사업심층평가, 조세특례심층평가 등

-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범부처 특구·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 마련 검토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정책기획관]**

○ 전국의 특구· 산업클러스터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경우도 38개 유형의 188개 특구가 지정돼 있음

○ 국토부 소관이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6개, 도시재생혁신지구 1개, 투자선도지구 1개, 혁신도시 1개, 수소도시 1개, 국가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6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1개,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2개, 일반산업단지 23개, 임대전용산업단지 4개 등 108개

○ 산업부 소관으로 자유무역지역 2개, 외국인투자지역 2개, 소부장산업특화단지 1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1개, 기회발전특구 4개, 첨단투자지구 3개, 산학융합지구 1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1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1개, 노후거점산업단지 5개, 뿌리산업특화단지 5개, 생태산업단지 12개 등 43개

○ 중기부 소관은 규제자유특구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 13개, 산업기술단지 1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2개, 도시형소상공인집적지구 3개 등 22개

○ 과기부 소관의 연구개발특구(2개)와 문체부 소관의 문화특구(1개)와 관광특구(2개), 농식품부 소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6개)와 말산업특구(5개)·국가식품클러스터(1개)·우수외식업지구(1개)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과 함께 참고자료2에서 보듯이 다양한 특구를 준비하고 있음. 향후 특구 지정시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 및 유사 특구의 통·폐합을 통하여 차별화를 꾀어야 함

○ 전북자치도는 특구의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16년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진행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기존 특구 및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구 지정시 특구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 및 효과 검증을 통한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뤄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참고 1 부처별 특구제도 관련 지원현황('25.2월 기준)

부처명	제도명	지정지역	세제[1]	재정[2]	인프라[3]	규제특례[4]
계		2,437	38	67	51	40
국토부 (25개)	도심융합특구	5	O (예정)	O	O	O
	입지규제최소구역	5	X	X	X	O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3	X	X	O	O
	산업혁신구역	1	X	△	X	O
	도시재생혁신지구	12	X	O	X	O
	투자선도지구	16	O	O	O	O
	혁신도시	10	O	O	O	O
	기업도시	4	O	O	O	O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0	X	X	X	X
	국가시범도시	2	X	O	X	O
	첨단과학기술단지	0	O	△	O	X
	해양관광진흥지구	0	O	△	O	O
	수소도시	9	X	O	O	X
	국가산업단지	52	△	O	O	O
	농공단지	482	△	△	O	O
	도시첨단산업단지	48	△	O	O	O
	모빌리티특화도시	3	X	O	X	X
	새만금투자진흥지구	1	O	X	X	X
	스마트그린국가시범 산업단지	2	X	O	O	X
	스마트그린산업단지	21	X	O	O	X
	이전기업전용단지	0	X	X	X	O
	일반산업단지	738	△	X	X	O
	임대전용산업단지	24	X	X	X	O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1	X	△	O	O
	혁신성장진흥구역	2	X	X	X	O
산업부 (18개)	경제자유구역	36	O	O	O	O
	자유무역지역	13	O	O	O	O
	외국인투자지역	30	O	O	X	X
	소·부·장 산업특화단지	10	X	O	O	O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12	△	O	O	O
	기회발전특구	46	O	O	O	O (예정)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부처명	제도명	지정지역	세제[1]	재정[2]	인프라[3]	규제특례[4]
	첨단투자지구	9	△	△	X	X
	수소특화단지	2	X	O	O	X
	산학융합지구	17	X	O	O	O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6	△	O	O	X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1	△	O	O	O
	공동집배송센터개발 촉진지구	0	X	△	X	O
	폐광지역진흥지구	7	△	O	O	O
	지역혁신융복합단지	14	△	O	X	O
	재자원화사업클러스터	0	X	△	△	X
	노후거점산업단지	63	X	X	O	X
	뿌리산업특화단지	58	X	X	O	X
	생태산업단지	105	X	O	O	X
문체부 (9)	문화특구	13	X	O	X	X
	관광특구	36	X	△	X	O
	국제회의복합지구	7	△	O	X	X
	문화산업단지	3	△	X	X	O
	문화산업진흥지구	11	△	△	X	O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	O	X	O	X
	인쇄문화산업단지	0	X	X	X	X
	문화지구	6	△	△	X	X
	동계올림픽특구	5	O	O	O	O
중기부 (8)	규제자유특구	29	X	O	O	O
	글로벌 혁신특구	4	X	O	O	O
	지역특화발전특구	175	X	X	X	O
	산업기술단지	19	△	△	X	O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0	△	△	X	X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8	△	△	X	O
	지역 중기 스마트혁신지구	0	X	△	X	X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1	X	△	O	X
농식품부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	40	X	△	O	X
	말산업특구	14	X	O	X	X
	국가축산클러스터	0	X	△	O	X
	국가식품클러스터	1	O	O	O	X

부처명	제도명	지정지역	세제[1]	재정[2]	인프라[3]	규제특례[4]
	종자기술연구단지	0	X	O	O	X
	화훼산업진흥지역	1	X	O	O	X
	우수외식업지구	19	X	O	X	X
해수부 (7)	마리나산업단지	0	△	X	O	X
	해양박람회특구	1	O	X	X	X
	해양산업클러스터	2	△	X	O	X
	수산식품클러스터	2	X	O	O	X
	양식산업단지	0	X	△	X	X
	김산업진흥구역	5	X	O	O	X
	해양치유지구	0	△	X	X	X
과기부 (6)	연구개발특구	19	O	O	O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4	O	O	O	O
	소프트웨어진흥단지	0	X	△	X	X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	0	X	△	X	X
	연구산업진흥단지	2	X	O	O	X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	0	X	△	X	X
복지부 (2)	첨단의료복합단지	2	O	O	O	X
	한방산업단지	0	X	X	O	X
환경부 (2)	녹색융합클러스터	2	X	O	O	X
	물산업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1	X	O	O	X
우주청(2)	우주산업클러스터	3	X	O	O	O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1	X	O	O	X
산림청(1)	석재산업진흥지구	0	X	△	X	X

1) 세제 : 국세감면 포함시 O, 지방세·부담금 감면만 있는 경우 △ 표기
2) 재정 : 예산지원 중인 것은 O, 지원규정만 있거나 임대료 감면 등은 △
3) 인프라 : 인력양성, 컨설팅, 시설설치, 전문기관 지원시 O, 지원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없는 경우 △
4) 규제특례 : 규정이 있는 경우 O

참고 2 전북특별법 지구·특구·단지 지정(조성) 관련 특례 현황

연번	실국명	조번호	사업명	구분
계			총14개	
1	기업유치실	64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	특구
2	기업유치실	71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특례	지구
3	기업유치실	73,74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지구
4	기업유치실	77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관리 특례	단지
5	농림국	18,19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지구
6	농림국	75 2.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단지
7	문화국	43~45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지구
8	문화국	49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특례	지구
9	문화국	50~62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	지구
10	미래국	75 1.	연구산업단진흥단지 지정 특례	단지
11	복지국	33~37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특례	단지
12	환경국	98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13	환경국	92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14	미래국	76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6.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경제·사회 위기 및 인공지능(AI) 시대, 세계 문화 중추 국가로의 정책 방향 제시

1 추진배경

○ 저출생 · 초고령화, 다문화사회, 지역소멸 · 지역 간 격차 등 사회위기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해법 요구

- 지역소멸로 인한 문화자산 소실 위험, 지역의 정주 · 생활 · 관계 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문화관광 정책 대응 중요성 증대

○ 저성장 고착화,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어 산업 ·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인공지능대전환 (AX · AITransformation) 시대 진입

- 글로벌 플랫폼 확대, 디지털 ·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

○ K-컬처 확산의 지속가능성, 국제사회 문화적 기여와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는 문화적 리더십 제고 필요

○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한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국가 주도 문화정책 한계 직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 재		미 래
국가 주도		민간 주도
중앙 – 지역 하향식 전달	⇨	중앙 – 지역 수평적 파트너십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아날로그		디지털·AI
국제사회 추격자		국제사회 선도자

※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문화 비전 필요

2 주요내용

○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았으며,

○ 문화의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 그리고 세계로 확산하는 '문화한국'의 실현을 위한 6대 방향의 핵심과제 (참고1 참조)를 제시함

1. 지역 문화 균형 발전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속 문화참여 · 누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의 창작 인력 부족 및 문화 접근성 등 격차 지속

- 취약지역 순회 공연 확대, 지역 예술단체 육성 등에서 나아가 지역 예술 생태계 회복, 지역 주민의 문화 참여와 향유 기반 확대

○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의 역사 · 전통 등 문화자산을 활용하고, 생활 · 관계 인구 증대 필요

- 지역의 문화 ·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매력 제고 필요

○ 중앙 주도 방식이 아닌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 관광개발 사업 등을 통해 현장과 밀접한 정책 추진 필요

- 국립문화기관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통해 중앙-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개발 등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의 역할 강화

2. 저출생 · 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 낮은 합계 출산율,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인구 차지 비중 증가

- 주4일제 논의, 인공지능 · 로봇 등 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화, 국민여가 시간 증대와 향유 행태 다양화 필요

- 어린이, 노약자 등 정책 수요자의 취향과 수요를 반영한 여가시설 전국적 확충 및 생활체육 확대 필요

○ 이주배경주민은 '35년 3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8%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문화사회 상호 문화 차이와 다름 존중이 더욱 중요

- 소수의 다수 사회편입을 위한 정책외에 다수 일반 국민의 다양한 문화 포용성,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필요

○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인파 관리 등 재난안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문화, 관광, 체육에 특화된 사고, 재난 안전 관리 전담 기구 구축

3. 콘텐츠 · 관광 · 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 콘텐츠산업의 성장에도 불구, 성공작을 기반으로 한 단기적 유행의 일회성 소비에 그쳐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계적 방안 필요

- K-콘텐츠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관련분야 아카이브 및 IP 활용 유도, 정책금융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IP 창출 등 지속 노력

○ 경제 저성장 전망 속 방한 관광객 유치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유망 스포츠 기업 지원으로 내수 중심 · 영세성* 극복한 성공모델 필요

* 스포츠 기업 중 매출액 10억 미만 비중 94.3% /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내수 비중 97.6%

- 방한 관광객 3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공유숙박, 광역교통체계 등 수용태세 개선 및 유망 스포츠기업에 대한 금융, 유통 지원 확대

○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예술 생태계가 아닌, 민간-시장 영역의 투 · 융자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선순환 모델 전환 요구

- 예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산업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융자, 펀드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 마련

4.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 생성형 AI 급격한 발전, AI 시장 성장, 일상화 등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 콘텐츠 · 문화 등 산업 전반 체질 변화와 혁신 요구

- 콘텐츠산업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인프라, 신산업, 규제 등 다각적 전략 수립 및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대응 필요

○ AI 활용 통해 창의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문화 · 스포츠 · 관광 서비스 혁신 지속

- AI를 활용한 새로운 영역의 창 · 제작 지원,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관광기업 AI 적용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 생성형 AI 활용 등에 있어 저작권 문제없는 학습데이터 보유가 중요한 가운데,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우리 문화 왜곡 대응도 필요

- 문체부 보유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학습데이터 구축 및 올바른 우리 문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취득 등을 통해 개방 · 공유

5. 글로벌 문화 리더십 제고

○ 한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정책적 요구도 다양해지며, 문화원이 단순 문화홍보를 넘어 한류 거점으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한류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재외문화원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문화원장에 대한 기초소양평가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 K-콘텐츠 수출액 증가 등 K-컬처의 영향력이 확대함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창조산업 성공 경험 공유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 증대

- 수원국 수요를 충족 시키는 하드웨어 (인프라기자재 등)와 소프트웨어 (교육,전문가 파견 등) 결합형 프로젝트 ODA 추진

○ 국제사회와 문화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 중이나 문화 분야 국제기구 인력 및 재외문화원 내 문화행정 인력 부족 지속

- 국제기구 (WIPO, UNESCO 등) 내 문화행정 인력 확대 및 재외문화원-주요 문화기관 매칭을 통한 문화예술 등 전문인력 파견

○ 남북한 정세변화에 따른 일회성 교류가 아닌, 문화적 · 정서적 문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이해 기회 확대 필요

- 아카이빙 등 남북문화교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맞추어 문화교류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 접근 추진

6. 문화 역량 제고

○ 총 여가 시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대량 보급에 따라 SNS, 플랫폼 기반 단순 소비형 문화콘텐츠 위주로 여가 활동 증가

* 지난 10년간 총 여가시간은 年 2,485→2,660으로 약 7%(175시간) 증가하였으나, SNS 활동 등 스낵컬처 이용은 258→855시간으로 230% 증가

-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 자기 성찰적, 생산적 문화 활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여가 활동으로 유도 필요

○ 인공지능(AI) 시대, 분야별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창의적 · 전문적 인재 수요 증가

-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복합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분야 간 경계를 허무는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사회 변동에 따른 뉴미디어콘텐츠산업 등 새로운 분야, 장르 탄생

* 2010년대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콘텐츠 플랫폼 등장에 따라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가 본격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음

- 분야 · 장르별 진흥법, 전담조직 마련 등을 통해 전략적 육성체계 필요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 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고자 함

○ 이번에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핵심은 국가 중심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및 지역과의 협력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과의 융합을

통해 문화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있음

○ 문체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예산 지원과 세부 과제 설정 등 후속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으로, 지역별 문화 균형 발전, 콘텐츠 및 관광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의 문화 분야 도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북자치도는 시대적 변화 및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기조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 주도의 자율적 성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디지털 · AI 기술을 활용한 문화 육성 및 융합 발전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성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우리지역의 문화정책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됨

○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한류로 대표되는 K-컬쳐의 세계적 위상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컬쳐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류를 한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삼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K-컬쳐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으로,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스토리텔링 자산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기반 마련과 전북만의 문화적 독창성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책과 보조를 맞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참고1 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

비전: 문화한국 2035

목표: 창의적 개인 | 행복한 사회 | 역동하는 경제 | 함께하는 세계

가치: 창의 + 혁신 | 다양 + 포용 | 개방 + 융합

핵심과제

지역 문화 균형

▌지역 문화 균형 발전
1. 국립예술단체·기관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 재구축
2.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모델 개발
3. 문화도시 3.0 추진
4. 新 광역관광 개발 및 지역 생활인구 확대
5. 중앙-지역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사회 위기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1. 수요자 중심 융복합형 문화시설 조성
2. 생애주기 생활체육 활성화
3.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4.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5. 문화·체육·관광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혁신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1. 콘텐츠산업 국가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2. 방한 외래객 3천만명 시대의 관광산업 체계 구축
3.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4. 시장 중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AI 기반 산업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1. AI 기술 대응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2.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3. 문화예술·스포츠·관광 AX 지원
4. 공공 데이터 구축·활용·개방 체계 마련

세계 문화 선도

▌글로벌 문화 리더십 제고
1.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혁신 및 한류 거점 기관화
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3. 수요 기반 문화 ODA 확대 및 권역별 협력체계 마련
4. 국가이미지 제고 통합마케팅
5. 남북 문화교류 전략적·단계적 추진

문화 역량 강화

▌문화 역량 제고
1. 독서·문학 진흥 및 인문 가치 확산
2. 사회 문화예술 교육 확대
3. 예술·콘텐츠·관광 창의인재 양성
4.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5. 문화예술 지원 방식 개선
6. 장르별 진흥법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사례 [부산광역시 외]

◇ 인구 다양성 증가 및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1 사업 추진배경

○ 최근 한국 사회는 이민 인구 증가와 함께 **인구 다양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65만 명**에 달함

○ 다수의 외국인 가정이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계층의 다양성 지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약 45% 급등**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현저함[2)]

<참고> 다문화가족 자녀 13,124명 중 학령기 자녀는 8,212명으로 **62%** 차지
: 학령기(7~18세) 자녀 수 : (`19) 6,376명 → (`20) 6,958명 → (`21) 7,525명 → **(`22) 8,212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계)	11,872	11,807	12,768	13,124
미취학 아동	5,496	4,849	5,243	4,912
취학 아동	**6,376**	**6,958**	**7,525**	**8,212**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3.11.]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등)의 보육료 지원은 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에 한정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보육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모든 아동의 보편적 보육 권리 보장, 나아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 등 선제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2) 지역별 인구다양성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3.)]

2 사업개요 및 내용

○ 외국인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타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요 사업 내용은 **직접적인 양육비 지원, 보육·교육 활동비 지원,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 및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고 있음

○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료 지원은 이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지자체별 주요 사업과 사례를 살펴보면,

① 부산광역시 (보육료 지원)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주 대상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 중 체류 자격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혜택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 시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함

- 최근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 개정**('25.4.16.)을 통해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신설된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함

- **제6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조항**을 통해 **보육·교육 관련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교육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 이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하며, **국적과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줌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취학 전 방문학습
3.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교육
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6.]

- **부산광역시 동구**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특히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이주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뽑힘. 2024년 기준,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하여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

※ 부산시의 보육료 지원 확대 계획 및 현황
: **지자체 최초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부산 동구'**의 사례와 더불어, 부산시가 정주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2024년 4월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 **2026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부산시는 0~5세 국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구상하며, 약 350명의 외국인 자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외국인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 추진(시비)** **신규**
-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전부개정('24. 4.), 및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 지원' 조항 신설을 위한「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25. 4.)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보육사업과 연계하여, 月 355~540천원 지원 ('26년 예정)

② 서울특별시(교육 및 언어지원 중심)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는 직접적인 양육비 지원보다는 자녀의 언어 능력 향상과

교육 기회 제공, 그리고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예를 들어,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멘토링,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③ 경기도 (맞춤형 재정 및 교육 지원)

-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시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한부모·다문화 가족의 생계 및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7~18세)를 대상으로 연 40만~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제공('24년 기준) 하는 등 복지 취약가정 발굴 및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는 지원 정책을 펼침

④ 전라남도 (교육 활동 지원)

-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명시하며, 한국어 교육 및 진로 상담 등 학업과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함. 외국인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둠

○ 여성가족부 (중앙정부 시범사업)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 이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가정의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함

- 이처럼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제도의 적용을 넘어 특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음

< 2025년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개요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이하 자녀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1차) 2025. 5. 2.(금) ~ 5. 30.(금), (2차) 7. 1(화) ~ 7.31.(목)

○ (신청장소) 전국 231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관계부서: 여성가족과 외]

○ 전북자치도는「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 또한,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내 외국인 주민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62,151명**이었던 외국인주민 수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73,802명으로 약 1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22년 11월 1일 기준 13,614명에서 **2023년 11월 1일 기준 13,885명**으로 약 2%(271명) 증가하는 추세임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외국인 주민 통계 ('24.11월 발표) >

연도	합계(명)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23.11.1.	73,802	13,505	5,872	9,799	2,781	20,842	7,118	**13,885**
'22.11.1	65,119	10,705	5,722	9,502	2,680	16,119	6,777	**13,614**
증감	8,683 <13%>	2,800 <26%>	150 <3%>	297 <3%>	1,071 <4%>	4,723 <29%>	341 <5%>	**271 <2%>**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그러나 현재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가정 자녀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편적 복지 시스템(예: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을 통한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부산광역시와 같이 '양육비'라는 명목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명시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사례는 아직 미비함. 또한, 경기도(고양시)처럼 특정 취약 계층(한부모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현금 지원 사업도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다른 지자체의 정책 변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 활동 지원을 넘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지원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및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자치도 역시 제9조(지원사업)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항목을 명확히 신설하거나, 기존 '보육·교육 지원' 항목을 확장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전북자치도의 특성과 외국인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양육 등 지원사업 추진으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임

2.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 운영 (경기도)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버스 도입·운영으로 봉사자들의 안전과 휴식 보장

1 추진배경

○ '23.9. SK하이닉스의 기부로 자원봉사자와 이재민을 위한 쉼터버스 도입

○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도에 전달 및 도입된 쉼터버스는 2033년까지 10년간 운영되며, 기존에도 재난 현장의 소방관 등을 위한 쉼터버스는 운영되고 있었으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쉼터버스 도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

2 주요내용

○ 제작된 쉼터버스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한 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 차량 내 종합상황실에는 재난상황실과 직접 소통을 위한 화상회의 공간이 마련돼 있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과 연계해 자원봉사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가능함

○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시 손목에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심박수, 체온, 쓰러짐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쉼터버스로 이동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차량 내부의 휴식칸은 우등좌석 12석을 비롯해 긴의자 4개가 설치돼 있으며, 휴식 시 명상 등 심신 안정을 위한 가상현실(VR) 체험기기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물 분사기, 외부 차양막 등이 설치돼 봉사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됨

3 운영계획

○ 운영방침

- 재난현장 이동쉼터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재난이 없는 평상시에는 현장 자원봉사자 지원 및 홍보차량 활용

○ 재난 발생 시

- 재난 발생 지역(도내 · 외) 최우선 투입, 재난 대응 자원봉사자 쉼터 운영
- 필요 시 이재민에게 쉼터버스 개방하여 임시 휴식처 제공
- 감염병 등 특수 재난 현장 지원, 의료진 및 현장 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 평상시

- 현장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농촌지역 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자원봉사 현장 이동식 쉼터 지원
- 청년봉사단 등 도 · 시군 주요 사업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주요 도정 현장, 시 · 군 축제 등 자원봉사 홍보부스 등 활용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대외협력과)**

○ 현재 도내에는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이동세탁차, 이동급식차,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현장 접수 및 타지역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한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또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정과 소통하며 이재민 및 피해복구지역에 순차적으로 배정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과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25년 5월 기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244개 단체, 162,1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현황》

운영 단계	주요 세부활동
① 지원단 구성・가동	◆ 운영 계획 수립, 상황 관리, 보고서 작성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규모(팀, 인력 수)・시기・설치 장소 결정 ◆ 초기 투입 자원봉사자 수 및 분야 도출
② 수요 파악 / 안전 확보	◆ 자원봉사활동 분야, 인원 등 수요 파악 ◆ 사고 발생 대비, 인근 의료기관 파악 ◆ 재난이 완전히 끝났는지, 2차 피해 발생 우려는 없는지 안전 확인 ◆ 자원봉사활동 시 주의사항 등 파악(낙상, 위험물, 붕괴 위험 등)
③ 모집/등록	◆ 위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가 모집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심으로 모집(유선) ◆ 대규모 인력이 필요할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 방송 등에 공고 ◆ 현장 도착 시 접수대장에 등록(단체명, 인원 수, 활동 기간, 구역 등)
④ 교육/배치	◆ 사전 안전 교육, 당일 수행할 자원봉사활동 교육 ◆ 남녀 / 연령 / 단체별 인원 / 선호 분야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의 혼란 방지 및 안전을 위한 통합적인 배치 조정
⑤ 활동관리・지원	◆ 위험요소 지속 모니터링, 부상자 등 의료기관에 인계 ◆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봉사자는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필요한 물품, 장비 등 모니터링, 부족 시 시군구 / 시도 / 중앙에 지원 요청, 예산 필요 시 단장을 통해 국비 / 지방비 등 지원 요청
⑥ 상황관리・보고	◆ 당일 투입 자원봉사활동 분야별・구역별 인원 등 현황 보고 ◆ 익일 투입할 자원봉사활동 분야별・구역별 인원 산출
⑦ 봉사활동 인정	◆ 1일 최대 8시간 시간 인정 ◆ 기부금 확인서(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8시간 5만원 기준) 등 발급
⑧ 활동 종료 / 평가	◆ 이재민의 수, 복구 진행률을 고려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철수 결정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관계자 대상 평가회 개최 ◆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종합보고서 발간 ◆ 우수활동가, 자원봉사자 포상

○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로, 종종 과중한 업무, 정서적 스트레스, 신체적 피로에 노출이 될 수 있음

○ 재난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성뿐만 아니라 현장 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체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함에 따라,

○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쉼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3.)]

<< 연구요약 >>

◇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국적 통계를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음. 분석 결과, **이주배경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공단을 넘어 농·어촌과 관광지 등 다양한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0~5세)에서도 외국인 자녀 비중이 크게 늘어,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실제 **이용률은 내국인 영유아가 약 60%인 반면 외국인 영유아는 약 40%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요인 분석 결과, **지자체의 추가 보육료 지원과 가까운 다문화·가족센터 설치가 이용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렸음**

◇ 다만 복잡한 절차, 한글 중심 안내, 통·번역 및 문화 중개 인력 부족 등으로 혜택을 놓치는 가정이 적지 않아, **시설 확충과 비용 지원을 넘어선 '문화적 수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 정책이 요구**됨

□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급증**하며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정부는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이 **출입국 단계에 치중**되어 정착 이후의 현실과 이주 배경 인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는 특히 **이주배경 영유아(0~5세)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주목**함. 이들이 겪는 언어·문화적 장벽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보육 접근성 격차를 진단**하며,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인구 다양성이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궁극적으로는 이주 배경 인구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정책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요약

제1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본 장은 이민행정의 변화, 이주민 밀집 지역의 특성, 이주 배경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 현황,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함

○ **이민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이민행정은 이주민의 **사회 구성원 자격 부여**와 **생활환경 조성**을 포함하며,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 기능에서 이주민 증가와 통합 문제 부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임

-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광주, 경기, 전북, 제주** 등이 다양한 조례를 갖춘 대표 사례임. 이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 주요 원인이나, 지자체별 지원 격차 및 법적·재정적 기반 미비가 과제로 남아있음

○ **이주민 밀집 지역 관련 선행 연구**

- 이주민 밀집 지역은 이주민의 **정착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내포함. 국내에서는 수도권과 산업단지 인근에 외국인 집중 거주가 심화되며, 국적·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

- 농촌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인구 감소를 보완하지만 지원 일관성 부족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비공식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지방정부의 맞춤형 서비스와 협력이 통합의 핵심임.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 5%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주배경 영유아 대상 보육 지원정책 현황**

-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은 **사회적 통합의 핵심 영역**임. 관련 법적 근거는 있으나,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큼. 실제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27%에 불과하며,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함.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배제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원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함. 현행 정책이 주로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외국인 영유아가 배제되는 한계가 있음

○ **이주배경 아동 보육서비스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 이주배경 영유아는 언어·문화 장벽, 제도 절차의 복잡성, 체류 자격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보육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음.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 통합과 교육 격차 완화에 매우 중요**하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특성, 정보 접근성 등이 이용 격차를 발생시킴. 국내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 중심의 질적 연구가 많아, 광범위한 이주배경 영유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량적 분석이 부족함.

○ 본 연구는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여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보육서비스 이용 자료와 결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 또한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이주배경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통합 및 정주 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제2장. 지역의 인구다양성 변화

○ 본 장은 인구다양성 지수(Population Diversity Index)의 산출 방법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주 배경 인구의 국적별 분포 및 영유아의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변화를 상세히 다루고 있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

- 연구는 지역사회 인구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을 시도**함. 이는 기존의 인구통계가 주로 국적, 민족, 언어 중 한 가지 측면만 반영하거나, 인종 및 언어에 관한 통계 자료의 부재로 인해 인구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국적을 주요 변수로 포함한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함. 인구다양성 지수는 각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지역의 다문화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됨

- 지수 산출 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여 인구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90일 이상 단기 체류 외국인까지 포괄하는 통계 기준을 적용하여 현실 반영도를 높임

○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인구 다양성 지수 변화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인구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함. 과거 수도권이나 특정 공단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되었던 양상과 달리, 농촌, 중소도시, 관광·레저 산업 지역 등

- **전국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확산되면서 인구 다양성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경기 남부(화성, 평택, 오산, 안성), 충청권, 경상권 일부 공단 밀집 지역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내어 제조업·물류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지속적 유입을 반영함

- **시도별 인구 다양성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2년에 지수가 증가한 지역이 다수 관찰됨. 광역지자체별 평균 인구 다양성 지수는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임. 이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치 정책이 확대되고,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표3-1> 참고

- 지역별로는 **인천(21.96%), 대전(17.67%), 전남(17.5%), 전북(16.94%)**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세종(-9.49%)과 서울(-0.92%)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며 지역 간 차이를 보였음

〈표 3-1〉 2018~2022 광역지자체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시도	2018	2022	증가율(%)
서울특별시	0.0755	0.0748	-0.92
부산광역시	0.0324	0.0336	3.7
대구광역시	0.0286	0.0325	13.64
인천광역시	0.0592	0.0722	21.96
광주광역시	0.0396	0.0442	11.62
대전광역시	0.03	0.0353	17.67
울산광역시	0.0466	0.0468	0.43
세종특별자치시	0.0411	0.0372	-9.49
경기도	0.083	0.0853	2.77
강원도	0.0315	0.0358	13.65
충청북도	0.0664	0.0743	11.89
충청남도	0.0857	0.0963	12.37
전라북도	0.0425	0.0497	16.94
전라남도	0.0469	0.0551	17.5
경상북도	0.0546	0.0587	7.52
경상남도	0.0573	0.0578	0.87
제주특별자치도	0.0752	0.0756	0.53
평균	0.0527	0.0568	7.79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읍면동 단위 분석**에서는, 인구 다양성 지수가 높은 지역은 주로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이나 산업단지 주변 지역이었음. 반면, 지수가 낮은 지역은 주로 외곽·산간·도서 지역 등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한 농촌 지역이었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기존 외국인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전역으로 인구 다양성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

- **전북 지역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다른 수도권이나 산업 밀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일부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 다양성 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2022년 기준 전라권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는 베트남, 중국 순으로 나타나, 농업·제조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이주배경 인구의 국적별 분포**

- 2022년 기준 전국 이주배경 인구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남. 이는 산업 구조 및 고용 허가제 등 비자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제조업 및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이주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지역별 국적 분포의 경우, 수도권은 중국계 인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적 이주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라권**의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베트남 국적** 이주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라권의 **농업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활발함**을 시사함

○ **영유아의 지역별 인구 다양성 지수의 변화**

- 영유아(0~5세) 인구의 인구 다양성 지수 분석 결과, **영유아 인구의 다양성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2018년 0.0419에서 2022년 0.0609로 약 45% 급등**하며 가장 큰 변화를 보임 <표3-15> 참고

- 이는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가족 동반 비자의 확대로 인해 이주배경 영유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함. 영유아 인구 다양성 지수가 높은 지역은 주로 외국인 인구 밀집 지역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짐

〈표 3-15〉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2018년			2022년		
	시도	평균	N	시도	평균	N
1	서울특별시	.0618	411	인천광역시	.0902	133
2	경기도	.0573	493	충청남도	.0863	117
3	충청남도	.0506	115	경기도	.0780	505
4	인천광역시	.0495	131	충청북도	.0755	85
5	충청북도	.0364	71	서울특별시	.0733	415
6	경상남도	.0290	126	경상남도	.0522	146
7	경상북도	.0283	109	경상북도	.0520	124
8	제주특별자치도	.0269	35	광주광역시	.0461	67
9	광주광역시	.0256	63	세종특별자치시	.0417	15
10	전라북도	.0221	82	전라북도	.0404	99
11	울산광역시	.0220	50	제주특별자치도	.0395	38
12	대구광역시	.0214	93	전라남도	.0380	87
13	강원도	.0193	57	대구광역시	.0357	105
14	전라남도	.0192	61	강원도	.0318	80
15	부산광역시	.0177	150	부산광역시	.0302	143
16	세종특별자치시	.0174	13	울산광역시	.0300	52
17	대전광역시	.0167	63	대전광역시	.0264	68
	합계	.0419	2,123	합계	.0609	2,279

주: 평균은 지수가 0 초과인 읍면동만 대상으로 계산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전북 지역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세 이하 영유아 계층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전국 평균이 약 45.35% 급등한 반면, 전북은 약 82.81% 상승**하여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이는 전북 지역에 정착

하는 이주배경 가정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자녀 양육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2018년 대비 2022년 영유아 인구 다양성 지수가 **증가한 지역 목록**에 전북의 일부 읍·면·동 지역이 포함되어, 해당 지역에서 이주배경 영유아의 증가가 활발함을 보여줌. 영유아의 국적 분포에서도 성인 인구의 국적 분포와 유사하게 **베트남 국적 영유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분석 결과, 한**국 사회의 인구 다양성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인구에서도 이러한 다양화 추세가** 명확하게 관찰됨. 이는 이주 배경 인구가 단순한 노동력 공급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인구 다양성 지수**는 이러한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함

제3장.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본 장은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보육 수요와 이용률 변화, 외국인 영유아 및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결정요인을 다룸

○ **지역별 보육 수요와 이용률 변화**

- **0~5세 영유아 인구**는 2016년 2,647,419명에서 2019년 2,130,55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반면, **0~4세 외국인 인구**는 2016년 27,908명에서 2022년 36,4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전체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주 배경 영유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보육시설 수는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영유아 인구 감소**

폭이 더 커 0~5세 영유아 100명당 보육시설 수와 정원 수는 외형적으로 개선되는 지표를 보임.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아동이 많은 지역의 시설 공급률이 낮거나 충원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견됨. 이는 단순한 시설 수 지표만으로는 보육 인프라의 실제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전국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8년 26%에서 2022년 41%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임. 그러나 내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약 60%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인 영유아보다는 높지만 내국인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북 지역의 보육 수요 및 이용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영유아 인구 감소 추세는 전북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외국인 영유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른 보육 수요 역시 증가함
 · 보육시설의 공급 및 정원충족률은 전북 지역 내에서도 읍면동별로 차이를 보임. 특히 농촌 지역이나 일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보육 인프라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관찰됨

○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인구 다양성 지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지역사회의 인구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주배경 가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정보 접근성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보육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보육료 지원정책이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유무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됨. 이는 제도적 지원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제공 및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통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을 시사함

- **전북 지역**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시행 여부가 해당 지역의 외국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책의 범위나 지원 수준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직 지원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이용률이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

○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에서는 **가구 특성 및 지역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이 밝혀짐. 부모의 학력, 소득, 언어 능력 등 가구 수준의 미시 변수와 함께 지역의 인구 다양성 지수, 보육시설 가용성 등이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특히,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정보 공유와 상호 지지를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함을 시사함

- **정책적 지원의 영향력**은 다문화 영유아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는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는 제도적 지원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재확인하는 결과임

- **전북 지역의 다문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다음과 같음:
 · 전북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여부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이 다문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구의 집적도가 높아 해당 지역 내 다문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그러나 아직 보육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도 존재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분석함. 전국적인 인구다양성 증가는 물론, 특히 **전남·전북** 등지에서 다양성 지수 상승이 두드러짐.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은 **'다문화 가구 비중'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문화 가구 내 안정성과 정보 공유가 긍정적 작용을 함을 시사함

○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 등 정책이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나, 언어·문화 장벽 해소를 위한 **다언어 정보 제공 및 문화 매개자 배치가 필수적임**. 결국 보육 이용률은 경제적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구 밀집도, 지원 기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함. 연구의 의의는 행정통계 기반의 실증분석과 지방정부 지원의 중요성 입증에 있으며, 한계는 분석 범위의 제약과 미등록 아동 미포함 등임

○ 분석 결과, 이주 배경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맞춤형 지원 강화**가 필요함. 시군구는 인구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생활권'을 지정**하고, 거점시설 및 보육, 고용 등 패키지 지원 활성화를 강조함. 더불어 **'외국인 가정 보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다언어·다문화 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족 단위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

○ 이주배경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세분화와 사각지대 해소** 또한 중요함. 다문화 가구와 다른 외국인 가구 간 체류 안정성 및 언어·정보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분화**하고, 특히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보편 보육을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 임시 체류 허가 등 법적 제도 마련과 함께 문화적·언어적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이주배경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함. 지역 간 보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기존 시설을 다언어·다문화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최소 보육서비스 표준 마련**을 통해 모든 이주배경 아동이 차별 없이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고, 이주배경 아동이 한국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 방향임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대외국제소통국 외]

○ 전북자치도는 최근 한국 사회 전반의 인구 다양성 확대 추세 속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는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이주배경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전북자치도의 인구다양성 지수**는 **약 16.94% 상승**하여 **전국 평균(7.79%)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증가 폭**을 보였음. 이는 결혼 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구가 전북 지역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냄

> ※ **전북자치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 - ('18년) 0.0425 → ('22년) 0.0497, **약 16.94% 상승** (전국 평균 약 7.79% 상승)
>
> ※ **전북자치도 영유아(0~6세)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 - ('18년) 0.0221 → ('22년) 0.0404, **약 82.81% 상승** (전국 평균 약 45.35% 상승)

○ 전북자치도는 이민 행정 및 **외국인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그러나 전북의 정책 대응은 여전히 **'다문화가정 복지 지원'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문화적 오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거리감과 갈등이 잔존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 배경 인구가 거주하며 유사한 도전 과제에 직면한 **경기도의 정책 연구** 사례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경기연구원은 이주배경 인구에 대한 정책을 '유치-정착-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포용성 ▲다양성 ▲보편성 ▲전문성**의 4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 틀을 제시하기도 함

○ 전북자치도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참고하여,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공존' 중심의 포괄적 수용체계를 구축**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제언처럼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선주민(先住民)의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 전환 ▲외국인 근로자 가족 정주 대비 ▲이주배경 인구 종합지원센터(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전북 지역 특성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3)]

○ 또한, **다양성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을 동등한 지역 구성원으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함

3) 유정균 외 (2024).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정책연구 2024-53). 경기연구원, pp. 3-4.)

2.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전략 연구 : [전북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5. 2.)]

<< 연구요약 >>

◇ 본 보고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을 다루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내용 요약** 및 소개하고자 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정책 현황, 지역별 유학생 유치 및 학업 현황**, 그리고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정책**은 **지방소멸 대응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잠재적 노동 인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해외 정책사례**에서는 **유치 단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장기 정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시장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대비 유학생 비중 또한 이들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은 **거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이 포용적**이라고 느낄수록 **한국 및 해당 지역에 취업할 의사**가 높게 나타났음. **정책 제언**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창업 연결 사다리 강화,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지역 이해도 및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그리고 **지역 외국인 유학생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패키지화**가 중요함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제학생 이동의 증가와 함께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방대학과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집중도** 및 **졸업 후 국내 정착 현실**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내에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실태 파악**을 통한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 본 연구는 **유학생 정주지원 필요성**이 커진 배경을 **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 정책적 의의 변화**를 통해 검토하고, **유학생의 인적 특성 및 학업**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정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요약

1.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책적 의의

○ **지역 정책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의의**

- 외국인 유학생은 이주자이자 학생이지만 언제든지 정체성의 변화가 가능함. 교육서비스 소비자, 생활 인구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잠재적 노동 인력인 구직자 및 취업 예정자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정책**

1) **중앙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 정부는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주 지원사업,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 및 RISE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정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이민정책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유치 종합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또한, 유학생의 유치 및 학업 단계는 대학 정책 및 지방 소멸 관련 부서가, 체류 단계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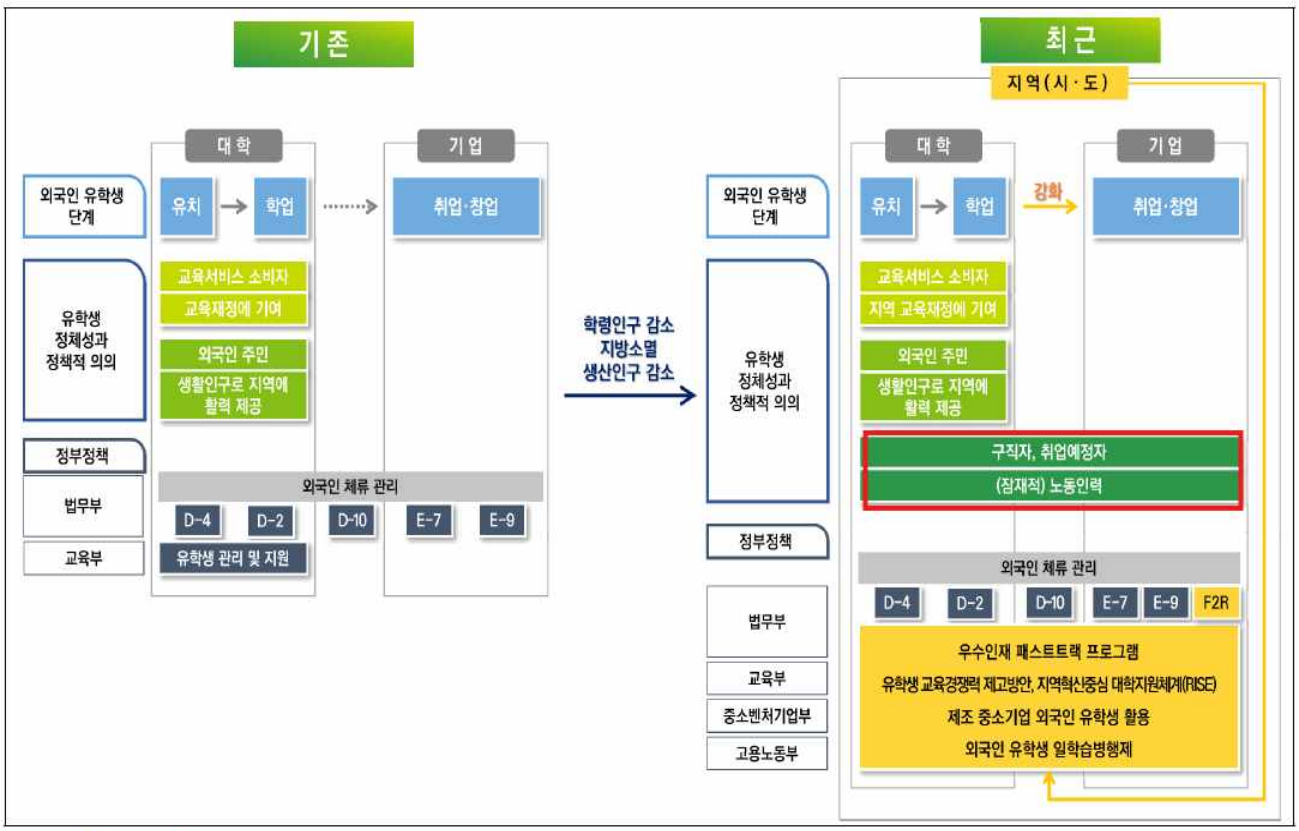
부서가, 취업 단계는 일자리 및 경제 관련 부서가 주로 담당하며,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 유치 및 적응, 관리, 취업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특징과 한계

- 지방 소멸 대응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지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학생'이라는 유학생의 정체성과 잠재적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간의 충돌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지적됩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의 기술 수준 및 전공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대도시나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유도할 정책적 공백이 존재함

그림 2 |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목표와 지역정책적 의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2. 해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정책

○ **해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정책사례 비교**

- 호주, 독일, 대만은 구체적인 수단은 다르지만, 국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짐 ※ <표2> 해외사례 조사결과 참고

○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사례 국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및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 **단계서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장기 정주의 대상이자 노동 시장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들은 학업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가능한 시간을 늘리는 한편, 학업에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강화하는 등 이민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함

- 또한, **유학생의 학업 과정 경험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피드백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 이와 함께 **유치-학업-졸업 및 취업-정착**에 이르는 유학생의 전 주기에 걸쳐서 **예측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나아가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연결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서로 다른 인력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유학생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

표 2 | 해외 사례 조사 결과 요약

구분	호주	독일	대만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배경 및 특징	• 국제교육이 가장 큰 서비스 수출 부문 • 유학생 출신국가 다변화 모색 • 고급인력 확보 위해 유학생의 이민장벽 낮춤	• 전문인력 수급 문제 대응 • 학생 수 감소 대응	• 생산가능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 대도시 인구 집중 • 대학의 위기 가속화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중국과 인도 출신 비중이 37% •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등 대도시에 유학생 집중	• 46만명(2024년) •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학생이 32.3% 차지 • 수학, 공학, 자연과학 및 기술 분야 유학생이 절반 이상 • 학사보다 석사과정 유학생이 더 많음	• 11만명(2024년) •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본토 출신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출신이 가장 많음 • 대도시인 6개 직할시에 유학생의 82%가 집중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 국제교육 전략을 통한 체계적 관리 • 비자경쟁력 강화(학생들의 근로 권리, 거주 및 고용에 대한 경로 강화 등) • 국가 이민전략과 연계 • 전 세계적인 홍보 강화	• 외국인 유학생에게 자국민과 같은 무상교육 기회 제공 • 전문인력이민법을 통해 독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인정	• 정부 주도 장학금 정책 강화 • 해외인재유치기지 설치 및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홍보 강화 • 취업 및 정주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강화 • STEM, 금융, 반도체 등 특정 분야 유학생 유치 지원
외국인 유학생 정주 촉진 전략	• 졸업 후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단기/중기) 설문조사 실시 • 임시졸업비자 기간 연장 • 비자 조건에 대한 유연성 확대(예: 온라인으로 공부한 시간을 포함하여 임시졸업비자 취득 요건 인정)	• 전문인력이민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 유학생의 전체 학업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FIT 프로그램) • MINT 분야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대학의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MINTchallenge International)	•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하는 비자 정책(예: 외국인 전문 인재 모집 및 고용에 관한 법률, 대만 취업골드카드)
지역 기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지역 주도 또는 특정 지원에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촉진)	• 주 정부 추천프로그램 - Western Australia(WA)주의 State Nominated Migration Program 중 Graduate Stream - South Australia(SA)주의 South Australian Graduates-Skilled Migrants • Destination Australia Scholarship(2024년 중단)	•특정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촉진하는 정책은 부재	• 유학생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타이베이시) • 해외 도시와의 교류사업 통해 유학생 유입 경로 마련(타오위안시) • 기업-외국인 인재 매칭 플랫폼(신베이시) • 국제학생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타이중시) • 유학생과 지역주민 교류 기회 제공(타오위안시)

자료: 저자 작성

3.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업현황

○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황**

- COVID-19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9년 54.3%에서 **2023년 57.9%로 증가**하여, 청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대학 재적학생 수, 등록외국인 수 등 인구 관련 다른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표 3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전국 대비 비중(%)

구분	외국인 유학생 비중	전체 인구 비중	청년인구 비중	생산가능 인구 비중	대학 재적학생 비중	등록 외국인 비중
수도권	57.9	50.7	55.8	52.3	48.8	56.3
비수도권	42.1	49.3	44.2	47.7	51.2	43.7
광역시	19.7	19.5	19.1	19.4	21.5	11.9
비인구감소지역	19.5	22.1	20.5	21.9	26.0	23.3
인구감소지역	2.8	7.7	4.6	6.4	3.7	8.4

자료: 통계청, 2023, 인구총조사 ; 법무부, 2023.12, 등록외국인 시군구별·체류자격(세분류)별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23, 외국인 유학생 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 차별화**

- **중국, 미국, 일본, 몽골 유학생**은 **수도권 비중**이 높은 반면, **베트남 및 중앙아시아 5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은 **비수도권**에 더 많이 집중됨

○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수준과 전공에 따른 유형 구분**

- 외국인 유학생이 10명을 초과하는 8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학위 및 전문 학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다수로 나타남

○ **지역 인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

-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기여가 더 크게 나타나며, 특히 강원 고성군, **임실군**, 영암군은 지역 인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위상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파악됨

표 6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인구 대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기준)

구분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유학생 비율(%)	청년인구 대비 유학생 비율(%)	생산가능인구 (15~64세) 대비 유학생 비율(%)
수도권	7.09	1.48	0.56
비수도권	4.91	1.35	0.45
광역시	5.49	1.47	0.51
비인구감소지역	4.48	1.35	0.45
인구감소지역	4.61	0.87	0.22
전국	5.98	1.42	0.5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3, 고등교육기관 개황; 한국교육개발원, 2023, 고등교육통계(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 활용)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학업 단계 경험과 취업의사(전북특별자치도 사례)

○ 사례지역 연구 개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업 단계의 경험이 졸업 이후 취업 및 창업을 통한 계속 체류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북 지역 소재 대학 재학 외국인 유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유학 과정, 학업 및 경제활동 경험,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인식, 졸업 후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업단계 경험과 한국 내 취업의사

1) 유치단계 경험

- 유치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결정 시 주변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SNS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대학의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며, **자비로 유학 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학업단계 경험

- 한국과 전북 지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 기간동안 학업을 수행함. 이들은 대학, 지자체,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 중 한국 전통문화체험 행사 및 한국어 강좌 참여 경험이 많았으며, 이러한 경험이 정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10명 중 3명꼴로 시간제 근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대학이 소재한 시·군에 거주하고 학교 기숙사가 주요 거주 형태임. **대부분의 유학생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유학**을 왔으며, 인터넷·SNS 검색과 지인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됨. 유학생들은 **유학한 대학이나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3) **졸업 후 한국 및 지역 내 취업 의사**

-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4.3%**였으나,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73.4%로 나타남. 한국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한국밖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며,

- 한국에서 취업할 회사 선택 시 임금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교육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전북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7.9%**에 달했음

4)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인턴십 기회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한국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9%**로 나타남

○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취업할 의사는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학위 수준,

정규 과정 이외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시간제 근로 경험,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변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에 기회가 될 경우 한국에 취업할 의사**는 **출신 국가, 학위 수준, 시간제 근로 경험, 거주 기간,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지역이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정도** 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2) **전북자치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 경우) 전공, 정규과정 이외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지역 거주기간,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지역이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정도, 기숙사 거주 여부 변인에서 유의미함

- (미래에 기회가 될 경우 한국에 취업할 의사가 있 외국인 유학생 경우)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전공,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변인에서 유의미함

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방안

○ **정책 기본 방향**

- **유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인턴십 기회 제공'**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취·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다리를 강화하고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인적 및 학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지역 일자리 수급 계획**에 기반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학생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기업과 학생 간의 간극을 메울 실효성 있는 산학연계프로그램 대폭 확대**가 필요함

○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방안**

-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창업 연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유형화를 통한 체류 경로 다양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산학 프로그램 확대,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지역 이해도 제고와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지역 외국인 유학생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함

- **지역 외국인 유학생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패키지** 마련을 위해서는 통계 연계 및 성과 조사 시스템 구축, 지역 일자리 수급 계획 하의 취업 지원 정책 추진,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학업과 산업 간의 구조적 미스매치**로 인해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보고서 진단이 나옴

○ 전북 내 유학생의 **높은 지역 정주 의향**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계열 전공 유학생이 과반**인 반면, **지역 산업은 제조업 및 생산직 위주로 인력 수요가 불일치**함.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인지도가 60.5%로 낮고 정책 전달체계 미흡 및 실질적인 인턴십 기회 제공이 절실함

○ **지역 전략산업(농업, 탄소, 수소 등)과 연계된 유학생을 선별 유치하고 실효성 있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함. 또한,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여 **졸업 후 구직 비자(D-10) 유학생과 지역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것도 중요함[4].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방안도 병행이 필요함

4) 전북자치도 유학생 78% “전북에 살겠다”…현실은 ‘인문계-제조업’의 동상이몽 (전북도민일보, 2025.07.06)

3. AI 입은 로봇, '신체화 AI(Embodied AI)' 현황과 전망(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연구요약 >>

◇ '신체화 AI(EAI)'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1. 신체화에 의한 AI 진화와 새로운 로봇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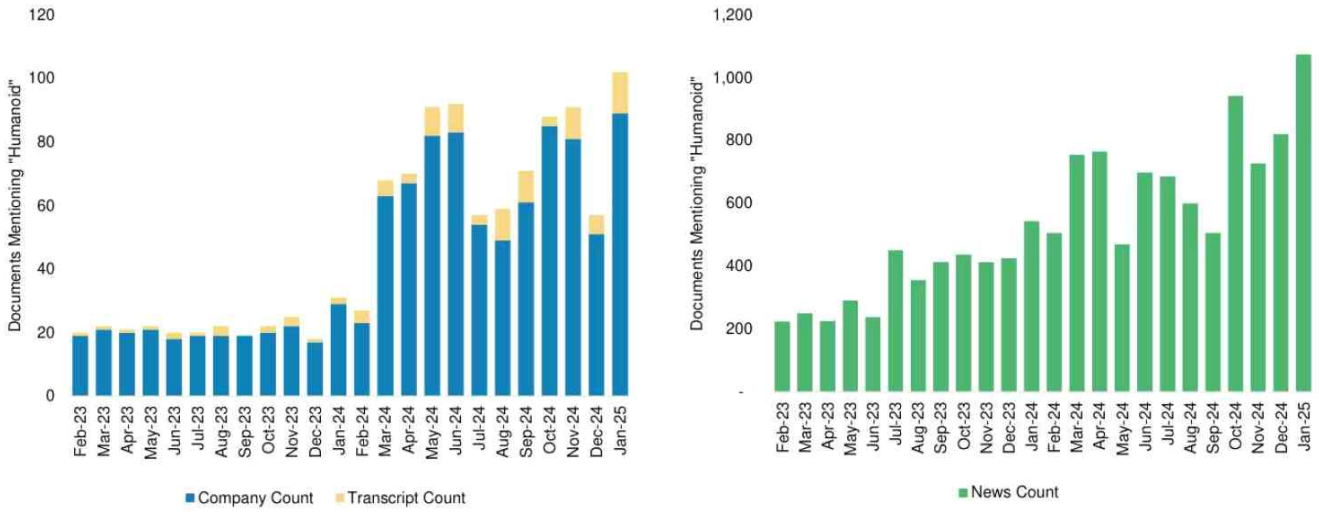
□ 로봇이 가져오는 혁신 : 범용 로봇의 시대는 도래했는가?

○ 전 세계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의 시장가치는 사상 최고치인 165억 달러를 기록(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IFR, '25.1)

- 향후 로봇 수요는 기술 혁신, 수요·공급의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범용 로봇 상용화의 기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로봇 개발을 위한 도전과 투자도 경쟁하듯이 추진

<휴머노이드를 언급한 기업실적 발표와 뉴스·미디어 보도의 변화>



출처 : AlphaSense, Morgan Stanley Research

□ AI 진화에 맞춰 변화하는 로봇 : 사회 현안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이고, 데이터나 컴퓨팅 문제 등으로 범용화·상용화 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만으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가 활성화

- 제조 공정에서 널리 사용하는 로봇 팔이나 자율 이동 로봇과는 달리,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반적으로 인간 형태를 갖춘 로봇을 의미하며, 민첩성·적응력·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

※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 ('24)20억 3천만 달러→('29)132억 5천만 달러(연평균 45.5% 성장)(Markets & Markets)

※ 휴머노이드 로봇 총 시장 규모 : '35년까지 380억 달러, 로봇 출하량은 140만 대에 이를 것(골드만삭스)

○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는 기술 발전, 인구감소,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동화 수요 증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인력 감소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물류·간병 등 산업 전반에서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해결책으로 부상
- 제품 설계, 가격 경쟁력, 대중적 수용 등의 주요 장벽이 극복되는 이상적인 부족의 최대 53%를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추산(골드만삭스 리서치)

○ 특히, AI 기술을 적용한 '신체화 AI(Embodied AI)'는 현안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서 급속히 진화

- 신체화 AI는 역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한 고성능 지능형 시스템이며, 뛰어난 '일반화 능력'으로 인간의 인지·지각·운동 기능을 모방해 정교한 현실 세계의 작업을 수행(실용적인 로봇 개발을 위해서는 '고급 일반화'의 힘이 매우 중요)

○ 새로운 신체화 AI의 성장은 센서·AI 칩·배터리·전기 기계 부품과 같은

HW부터 머신러닝·자연어 처리·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과 같은 최첨단 SW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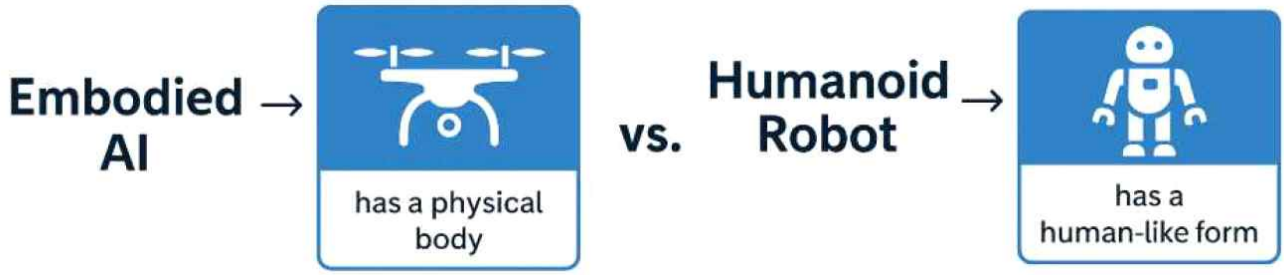
2. AI로 격변하는 로봇, '신체화 AI(Embodied AI, EAI)'

□ AI 진화에 신체가 필요한 이유 : AI를 입은 로봇은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는가?

○ 생성AI가 디지털 세계(비트·바이트)에서 물리적 세계(원자·광자)로 계속 이동하면서 '신체화 AI(Embodied AI, EAI)'가 빠르게 발전하고,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 휴머노이드 로봇과 신체화 AI는 밀접히 연결돼 있지만 의미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신체화 AI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신체화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일 필요는 없음

<신체화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출처 : 챗지피티가 생성한 이미지

<신체화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차이점>

항목	신체화 AI(Embodied AI, EAI)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정의	물리적인 몸(신체)을 가진 AI 시스템	인간의 형태를 가진 로봇
중점	지능·신체의 통합과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	형태(사람처럼 생긴 외형)와 동작 중심
기술 범위	AI + 센서 + 하드웨어 + 학습 등을 포괄	신체화 AI의 한 사례일 수 있음
형태 제한	반드시 사람처럼 생길 필요는 없음 (예: 네 발 달린 로봇, 드론 등도 포함)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지향(팔·다리·머리 등)
예시	Spot(보스턴 다이내믹스), 드론, 배송 로봇, 자율주행차	Optimus(테슬라), ASIMO(혼다), Atlas(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처 : 챗지피티 설명 내용을 재정리

○ 신체화 AI는 신체를 가진 AI를 의미하며, 물리적 신체와 지능형 에이전트를 갖추고 실세계에서 물체를 조작하거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반의 AI 시스템

- 로봇과 같은 물리적 신체에 AI가 융합, 환경을 인지·학습해 동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고, 계산·논리적 추론을 기반으로 지각·행동·환경 피드백을 통해 학습·적응해서 작업을 완료하는 시스템
- 즉, '몸을 가진 AI'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실시간으로 감각하고 반응하며 행동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하며, 시각·청각·촉각 등 다양한 센서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수행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이차전지탄소산업과]

○ 전북자치도는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돕기 위해 ▲개방 특허 무상 제공 ▲스마트공장 전문가 양성 ▲국내·외 바이어 매칭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2024~2026년까지 진행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일련의 효과를 내고 실제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었지만 관련 산업의 육성이나 개발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황임

○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임원사 30개, 정회원사 240개, 특별회원사 28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북 연고 회원사는 단 1개에 그치고 있음

○ 전북자치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을 통하여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고성능·고품질의 농기계를 개발하고 있음

○ 특히 '24년 '호남권 AI 지역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28년까지 국비 284억 등 총 사업비 426억을 투입해 인공지능 자율작업을 관제체계를 실증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의 디지털산업·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도내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나아가 전북자치도에서도 '25년 추가경정예산에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원이 증액 반영되어,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에서도 로봇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통하여 향후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2025 글로벌 로봇 산업의 5대 트렌드(국제로봇연맹(IFR))

1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가속화 - 피지컬형, 분석형, 생성형

- 분석AI를 통해 로봇은 장착된 센서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분석해 외부 환경, 다품종 소량 생산, 공공 환경에서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 관리를 지원

※ 비전 시스템을 갖춘 로봇은 과거 작업을 분석해 패턴을 식별, 작업을 최적화해 정밀도와 속도 향상

- 피지컬AI를 통해 로봇은 가상 환경에서 스스로 훈련하고, 프로그래밍이 아닌 경험을 통해 작동

※ 최근 로봇과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전용 HW·SW 개발 투자를 활발히 진행

- 생성AI 프로젝트는 피지컬AI에서 'ChatGPT 출시 순간'과 같은 충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
- 기존 산업 환경과 서비스 로봇 응용 분야에서 AI 기반 로봇 시뮬레이션 기술은 더욱 발전할 전망

2 휴머노이드 로봇 - 여러 스타트업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로봇 역사의 선두 주자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과 창고 관리업에서 활발히 진행
-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익성 있는 확장 가능한 산업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도 많아 물류나 창고 관리업에서 시장성 기대

3 지속 가능성 - 에너지 효율화로 제조업체의 지속 가능 목표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 수행

※ 제조업체들은 UN의 환경 지속 가능 목표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 요건

- 로봇은 비용 효율적인 태양광 패널, 전기차(EV) 배터리, 재활용 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 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생산을 확대
- 로봇의 가동 부품 경량화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다단계 절전모드로 하드웨어를 대기 상태로 전환해 전력 소비를 절감하는 등 로봇 자체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선도 촉진

4 로봇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 RaaS(Robot-as-a-Service, 로봇구독서비스) 확대

- 제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초기 투자 비용과 총소유비용이 높은 것이 로봇 도입의 장벽
- 수요에 맞춰 특정 산업·용도에 특화된 RaaS 제공업체가 기능성이 뛰어난 로봇 솔루션 공급

※ RaaS는 로봇을 직접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대신 서비스 형태로 임대하거나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5 로봇으로 노동력 부족 해결 - 로봇이 제조업에서 인력 부족의 영향을 완화

- 품질 검사, 유해한 도료 작업, 힘을 요하는 반복적 노동 등 지루하고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 수행
- 고성능 로봇, 협업 로봇, 이동식 매니퓰레이터 등 기술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노동력 보완

※ 매니퓰레이터는 로봇 공학에서 물체를 조작하고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장치. 여러 개의 관절과 링크로 구성된 로봇 팔 형태이며, 인간의 팔처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출처 : 국제로봇연맹(IFR)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top-5-global-robotics-trends-2025)

4.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2024.12.18.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충청광역연합'이란 명칭의 특별지자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했음
◇ 향후 특별지자체의 성공 과제로는 ①목적에 부합하는 초광역사무의 발굴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 ②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추진 조직과 인적 자원의 설계, ③재원 마련을 위한 구성 지자체의 자구책 및 정부 지원책 고려, ④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조정 방안 등이 필요

1. 들어가며

○ 2024년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충청광역연합'이란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를 전국 최초로 설립했음

○ 특별지자체는 기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연합한 것

○ 특별지자체 설립근거는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 특별지자체의 설치 및 상세 운영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할 계기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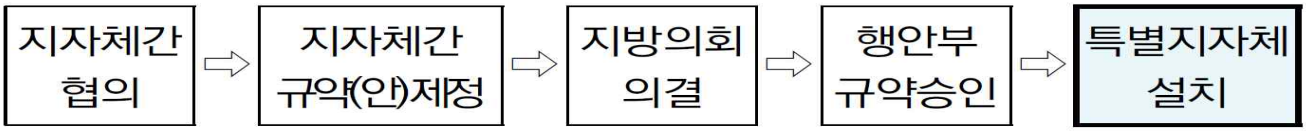
○ 지난 2022년에는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결성해 최초의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했으나, 결국 성공하진 못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 및 방식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동법 제199조제1항)

○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려는 지자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서 규약은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규정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절차 >



○ 특별지자체는 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을 구성해야 하며, 의회는 구성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자체의 장은 의회에서 간선하도록 하였고, 해당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자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함

○ 한편, 특별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성원인 지자체가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자체가 분담하며, 국가 또는 시·도 위임사무는 경우에는 그 사무위임자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함

○ 마지막으로 특별지자체에 가입 혹은 탈퇴하려는 지자체장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지자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흠

3. 충청광역연합 설립 현황 및 한계

(1) 설립 현황

○ 충청광역연합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특별지자체임

○ 광역연합의 추진 연혁을 보면, 2023년 1월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했고, 연합의 규약을 마련해 관계 시·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2024년 10월 「충청광역연합 규약안」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음

○ 2024년 10월, 각 시·도의회에서 선임된 2년 임기의 연합의원 16명(시·도별 4명)이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에 정식으로 출범했고, 그해 12월 31일부터 사무를 개시하였음

○ 출범한 당일에 연합의회를 열어 연합장(임기 1년)과 연합의회의장(임기 2년)을 선출하였고, 초대 연합장은 충북지사가, 연합의회의장은 충북도 의회의원이 맡았으며, 그리고 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구성했으며, 모두 4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임.

○ 한편, 광역연합이 수행할 광역사무는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4개 분야(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의 20개 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사무 1개가 있으며, 국가 위임사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개 분야의 1개 사무인데,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 사무이고, 특히, 충청광역연합의 사무 중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장 주목할 분야임

○ 2025년도 광역연합의 예산규모는 56억 원(사업비 30억, 의회 3억, 운영비 23억)이며, 4개 지자체별로 14억 원씩 부담했으며,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르면, 운영비는 구성 지자체가 균등 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지자체 간에 협의해 정함(제17조제2항).

[2] 한계

○ 먼저, 충청광역연합이 추진하는 초광역사업 중에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모호한 경우가 있으며, 「광역연합 사무처리 기본계획안('25~'29)」을 보면, 산업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초광역 사무가 추상적이고, 각 시·도별 역할분담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둘째, 충청광역연합이 사무를 개시했으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연합사무처는 주요 현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책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으며, 즉 광역협력계정 신설,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고, 연합의회에서는 연합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과 의원의 정책지원관 선발을 건의하였음

○ 셋째, 충청광역연합의 우려되는 사항은 지역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 특히, 갈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연합에서 이탈하고 결국 연합이 해체될지에 대한 우려이며, 이미 충청광역연합은 시작 단계에서 연합의회 원구성 문제로 갈등이 표출된 바 있음

○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행정통합이나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광역연합의 동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독립적 지위 강화, 충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강화 등임

4. 향후 과제

(1) 적합한 초광역사무 발굴과 체계적 계획 수립

○ 구성 지자체들은 특별지자체에 적합한 초광역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특히, 특별지자체의 초광역사무가 구성 지자체의 기존 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초광역사무를 선정한 경우에는 단위 사무별로 사무처리의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또는 이양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분권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무협의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 국가사무의 위임 또는 이양시 논의 절차와 방식,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사무의 이양 시 세부 권한과 더불어 재정 이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야 함

(2) 책임성 및 전문성 있는 추진 조직 및 인적 자원

○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집행기구와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조직 및 인력 설계가 요구됨.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구성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중에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하였음. 그러나, 초광역사무의 경우 전문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설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특별지자체의 소속으로 새로운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과 이들에 대한 직위나 직급 등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또한, 특별지자체의회 의원에게도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편, 특별지자체의 집행부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함. 집행기관의 장은 특별지자체의회에서 구성 지자체장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거나 혹은 외부전문가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데, 선출 방식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에서 정할 수 있음. 특별지자체의 사무들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대규모의 사업들이 많음. 따라서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대표자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비록, 구성 지자체장 중에서 특별지자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더라도 순번제가 아닌 책임 있는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재원 마련을 위한 지자체 자구책과 정부지원책

○ 특별지자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성 지자체 간의 재원 마련 방식과 함께 설립 초기·안정기에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경비는 4개 시·도의 분담금을 기초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구성 지자체가 모두 동일한 분담금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주관 사업별 사업비의 분담 기준이 필요함. 또한 특별지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입금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특별지자체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재원 마련의 노력이 필요함

○ 한편, 특별지자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설립 초기 단계부터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이 요구됨. ’25년 1월, 행정안전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음. 이 중에 특별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보면, ① 교부세 지원 검토(증액교부금 도입, 특별교부세 상향 등),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검토 등이 있음. 이처럼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광역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4) 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조정 기제

○ 특별지자체의 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규약에 지자체 간의 갈등·협력 규정을 마련해, 자체적인 갈등해결 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이와 더불어 지자체 간의 노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조정 기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 산하에 협의회를 두거나 혹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별도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 등도 있음

○ 끝으로, 구성 지자체 일방의 탈퇴로 인해 특별지자체가 해산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재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특별지자체는 지자체의 자율에 따라 설치 및 해지할 수 있지만, 갑자기 해지될 경우에는 구성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 및 이양받은 사무 역시 중단되고, 재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 및 재정적 낭비가 발생될 수 있음. 특별지자체가 설립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5. 올림픽에서 엑스포까지, 메가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국회도서관)

◇ 메가이벤트 개최의 의미와 쟁점을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효과 분석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올림픽(1988), 월드컵(2002) 등 스포츠형 메가이벤트를 비롯하여 대전엑스포(1993), 여수엑스포(2012) 등 대형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섬

○ 메가이벤트가 국가 이미지의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메가이벤트 개최의 의미와 쟁점을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정리함

2 메가이벤트의 개념과 유형

○ 메가이벤트(mega-event)의 개념과 기준은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참가자 수가 많고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며 개최지에 대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적 행사'로 정의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를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정의함



3 메가이벤트 개최의 동력

○ 국제 위상 강화과 경제 발전

- 국가 인지도, 브랜드 향상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포지셔닝 강화는 수출 확대, 투자 유치 촉진을 유발

○ 도시 재생 및 지역사회 성장 촉진

- 인프라 건설, 도시 재개발 등 도시 정비 투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

○ 국민 통합 및 사회적 자본 형성

- 공동체 의식 강화로 국민 통합과 자긍심,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

○ 관광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의 기회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소비 촉진, 고용기회 확대, 전통 · 문화 전파 기회 제공

4 메가이벤트의 경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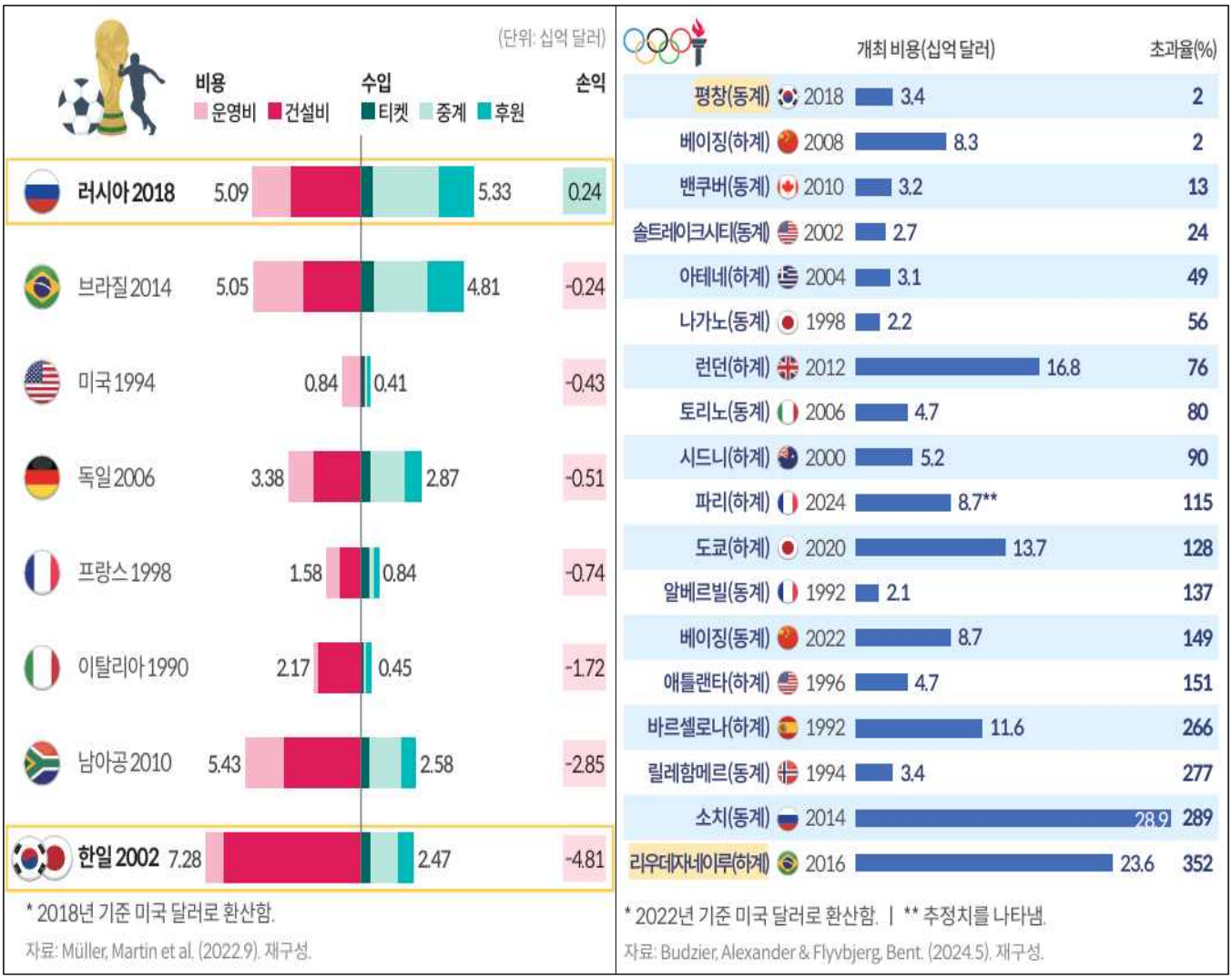
○ 1964 ~ 2018년 사이에 열린 올림픽과 월드컵 43개 대회의 총비용은 1,200억 달러 (약 166조 5천억 원)에 이른 반면, 수입은 700억 달러 (약 97조 1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8번의 월드컵 중 개최국이 수익을 낸 사례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유일함

○ 한 · 일월드컵은 개최국의 수입 대비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 이후 모든 올림픽 개최 비용은 예산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리우올림픽은 비용 대비 예산 초과율이 352%로 가장 높은 수준임

《 월드컵 개최국별 손익 현황 (1990 ~ 2018) 》 《 월드컵 개최 비용 대비 예산 초과율 (1992 ~ 2024) 》



5 메가이벤트의 사회 · 문화적 측면

○ 메가이벤트 개최 도시에서는 신규 시설 건설과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강제 이주에 따른 갈등을 초래하고 치열한 유치 경쟁과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집중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아테네올림픽 (2004)

- 7만 명의 군인 · 경찰 배치, 치안 유지에 15억 달러 투입
- 감시 · 추적카메라 시스템 강화로 사생활 침해 문제 발생

○ 베이징올림픽 (2008)

- 올림픽을 이유로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 조치 시행
- 물품 검사, 차량 다중 검문 등 광범위한 보안 조치 실시

○ 런던올림픽 (2012)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평시 보안 및 군사력 동원
- 14,000명의 병력, 23,700명의 경비, 8,000만 파운드 규모의 전기 울타리 등 보안에 10억 파운드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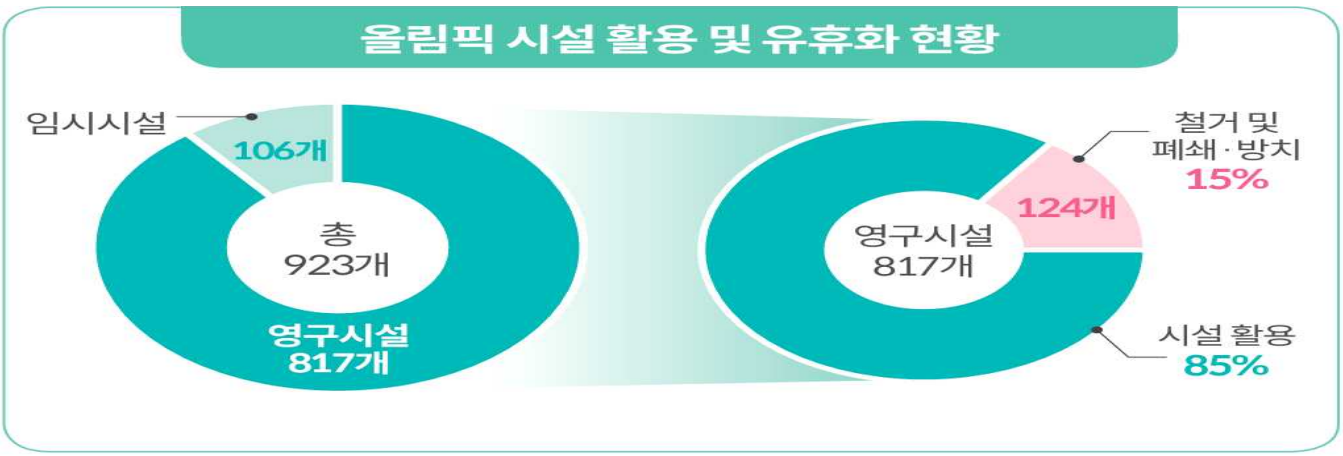
○ 리우올림픽 (2016)

- 2015년 6,600여 가구가 퇴거당했거나 퇴거 위협을 받음
- 경찰들은 올림픽 항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

6 메가이벤트의 환경적 측면

○ 대규모 시설의 사후 활용과 관리

- 메가이벤트 개최를 위해 평상 시 수요를 초과하여 건설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초과 혹은 과잉 시설로 남는 경우가 많음
- 1896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51번의 올림픽에서 총 923개의 시설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영구 사용을 목적으로 한 817개 시설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124개 시설이 철거되거나 폐쇄 · 방치된 것으로 나타남



자료: The Olympic Studies Centre. (2022.4.22). 재구성.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기후위기 영향 및 환경 오염

- 메가이벤트 개최는 자원 남용, 폐기물 증가, 생태계 훼손 및 탄소 배출 증가를 초래하여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를 가속화함
-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남짓한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배출된 온실가스는 아이슬란드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비슷한 규모임

2022 카타르 월드컵 온실가스 배출량 및 주요 배출원

총 배출량(100%) \| 3,808,357 (단위: tCO_2e)	
기타 간접배출(98.1%) 3,736,036	항공·운송(59.1%) 2,250,270
	인프라 건설 및 운영(22.6%) 862,526
	숙박(14.1%) 536,740
	기타(2.3%) 86,500
간접배출(1.6%) 60,423	전기(1.5%) 57,200
	냉각(0.1%) 3,224
직접배출(0.3%) 11,897	고정연소(0.3%) 11,431
	기타(0.01%) 466

자료: FIFA. (2023.6).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 순위



7 메가이벤트 성공 사례



명칭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주제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Better City, Better Life)"
개최 기간	2010.5.1.-10.31. (총 184일)
참가 규모	국가 및 국제기구 246개
방문객 수	7,308만 명

EXPO 2010 SHANGHAI CHINA

○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와 방문객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개최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계박람회로서 11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3만 명의 고용 창출

○ 도시 개발과 이미지 제고

- 엑스포를 계기로 1만 8,000여 가구 및 272개의 공장 이전, 도시 철도 부설 등 낙후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
- 상하이는 박람회 이후 중국 최대의 물류, 금융, 해운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자 아시아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

명칭	2012년 런던 올림픽
주제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
개최 기간	2012.7.27.-8.12. (총 17일)
참가 규모	204개국 10,568명의 선수
방문객 수	2,000만 명



○ 지속가능한 친환경 올림픽

- '저탄소 올림픽'을 표방하며 탄소발자국 측정, 재활용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경기장 건설 등 지속가능한 메가이벤트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 런던 올림픽을 위해 개발된 지속가능성 관리도구는 ISO 20121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표준)의 기반

○ 도시 재생의 성공적 사례

- 개발이 지연된 런던 동부의 6개 지역에 기반시설 마련, 이후 도시 재생에 활용하는 방안 수립
- 대표적인 빈곤 지역이던 스트랫포드에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공원과 경기장, 선수촌 등을 조성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 '런던유산개발회사(LLDC)'를 설립해 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추진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광주, 전남, 충남, 충북,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과의 연대를 도모함

○ 지난 6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탄소중립 · 스마트 기술 기반의 '그린올림픽'을 지향하고, 기존 체육 인프라 활용률 최대화, K-컬쳐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 전북만의 문화와 역사적 콘텐츠를 최대한 접목한다는 방침임

○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 'GBCH (Go Beyond, Create Harmony)' 챌린지에는 재외동포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약 한 달간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도내 '25년도 2036 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의 총 예산은 10,327백만원으로, 구성 비율은 유치총괄과 9,366백만원 (90.4%), 평가대응과 991백만원 (9.6%)이나,

○ 유치총괄과 전체 예산의 약 65%가 홍보 및 인식 제고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 사업 (홍보, 캠페인, 외교활동 등)은 성과 측정을 위한 명확한 지표가 부족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라 사업별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정기적 모니터링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많은 예산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집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계약방식, 성과보고, 예산 환수 조항 등을 포함한 성과기반 계약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홍보, 포럼, 퍼포먼스, 국제활동 등 중복 · 유사사업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사업 간 통합 및 기능 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계획된 국외활동은 실질적 외교 성과없이 출국↔귀국 중심의 형식적 출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외빈 초청이나 국제 컨퍼런스 또한 단발성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장기적인 파트너십(MOU) 체결 및 국제 경기단체와의 협력 로드맵 마련 등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 올림픽 유치 추진 체계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전략적, 실행적 측면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태로, 정책 실행의 정밀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대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만에 대한민국이 다시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만큼, 전북에 국한된 지자체 차원의 추진이 아닌 유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국가적 전략 수립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 메가이벤트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 등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북자치도가 이 기회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도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와 체계적인 실행이 필요할 것임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스타트업 파크 신축 구축사업 계획의 보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스타트업 파크 사업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이 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벤처캐피탈(VC) 등 창업생태계 주체와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존 2022년 선정지(경북 경산)의 3차년도 건립비 30억원과 신규 2024년 선정지(부산 북항)의 1차년도 건립비 71억원 등 총 101억원이 편성되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창업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는 경북IT융합기술원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2025회계연도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84,523	77,424	87,238	9,814	12.7
스타트업 파크	6,100	3,500	10,100	6,600	188.6
경북 경산(기존)	6,100	3,000	3,000	-	-
부산 북항(신규)	-	-	7,100	순증	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그 중 2024년 선정지인 부산 북항지구의 신규 건립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367억 9,000만원(지자체 현물지원 포함)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연안여객터미널 보세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9,128㎡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국비 126억원, 지자체 매칭비 188억 9,000만원(현물 67억 9,000만원 포함), 민간 53억원 등으로 분담할 예정이다.

[부산 북항 스타트업 파크 신규 구축사업 개요]

○ (대 상 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33번지, 부산항 북항 일원
○ (조성규모) 대지면적: 23,871㎡, 연면적: 9,128㎡(리모델링 후)
○ (유형구분) 도심형, 단독집적형, 리모델링
○ (도시계획) 창업촉진지구('19.12월), 부산항(북항) 재개발(1단계)구역('08.5월), 인구감소관심지역('21.10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24.4월)
○ (사 업 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국고보조금	대응자금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민간
'24년	7,590	현금 : 500	현물 : 6,790	-	현금 : 300
'25년이후	29,200	현금 : 12,100	현금 : 12,100	-	현금 : 5,000

* (현물1) 중앙동4가 15-33번지 보세창고 건물 6,000㎡ (시가 67.9억원)
* (현물2) 중앙동4가 15-33번지 토지 대지면적 23,871㎡



〈대상지 위치〉



〈대상지 사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신설되어 현재 5개소가 조성 또는 추진 중이다. 2024년 9월 말 현재 조성완료는 1개소(인천 연수), 건축 중 3개소(대전 유성, 충남 천안, 경북 경산), 추진 중 1개소(부산 북항) 등이다.

[전국 스타트업 파크 건립 현황]

사업연도	광역지자체	대표 협력기관	조성위치	조성현황
2019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연수구 송도	개소 완료
2020	대전광역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유성구 궁동	건축 중
	충청남도(천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역 인근	1개동 개소, 1개동 건축 중
2022	경상북도(경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임당역 인근	건축 중
2024	부산광역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북항 일대	'24년 신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 **첫째, 부산 북항 스타트업 파크 신규 건립사업은 아직 설계비가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국비부담액의 58.6%를 차년도에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액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사업은 2024년 예산으로 신규 선정지(부산 북항)에 대한 설계비 5억원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존 사업인 경북 경산(2022년도 선정)의 경우, 설계가 당초 계획대로 선정연도(2022년) 8월 이전에 착수되어 설계비 선금 50%를 집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비 미집행 우려에 따라 실제 공사 소요 예상기간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3개년도로 분할 편성· 집행한 사례가 있다(23년 61억원 → 24년 30억원 → 25년 30억원). 이를 감안하면 신규 사업인 부산 북항의 경우, 아직 설계 착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인 2년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 **둘째, 본 사업은 주변 상업·문화·주거시설과의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도심형 유형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의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 본 사업은 입지유형에 따라 크게 도심형과 산업생태계형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북항 스타트업 파크는 도심형으로서 기존 또는 신시가지에 스타트업 파크를 구축하고, 해당 파크를 거점으로 도심재생 등을 통해 창업인프라와 상업·문화·주거시설을 연계 조성하여 지속적인 정주요건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타트업 파크의 입지별 유형 구분]

구분	내용	예시
도심형	기존 또는 신시가지에 스타트업 파크를 거점으로 구축, 도심재생 등을 통해 창업 인프라, 상업·문화·주거시설 조성 및 연계 (예시: 서울 팁스타운)	
산업 생태계형	앵커기업 중심 산업집적 지역, 배후 도심(혁신도시 등) 기반 산업단지에 클러스터가 연계된 지역 산업 특화 창업기반 구축 (예시: 포항(지곡) 테크노밸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그런데 부산 북항 스타트업 파크의 경우 배후지역이 되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한 해당 지역 활용계획이 백지화되고, 1단계 지역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 부지가 2년 이상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사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 스타트업 파크의 입지 요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 역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에 따라 도심형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사업은 당초 단순 창업공간 마련만으로는 지역의 창업기반을 자생력 있게 유지하기 어렵고, 특히 스타트업의 주된 창업 계층인 청년층의 유인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도시화(재개발) 여부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2019년에 완공된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경우, 주변 투자환경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23년 기준 ‘스타트I’ 시설의 경우 전체 41개 입주기업의 20% 이상인 9개 기업이 퇴거하고, 본 사업체가 아닌 출장소만 설치하며 투자프로그램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 목표 대비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본 부산 북항 스타트업 파크 건립 사업은 신청자인 광역지자체(부산광역시)가 창업기획자(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대학·연구기관, 입주예정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 만큼, 당초 목적으로 한 지역 기반 창업클러스터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변 배후지구 재개발 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보완 방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대상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5.4.) -

가. 현 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내역사업(자치단체 보조)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탈면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수·보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1,080억 9,900만원이나 산불 발생지역 및 기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76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5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B-A)/A
재해위험지역 정비	869,666	874,154	891,832	17,678	2.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49,096	108,099	125,777	17,678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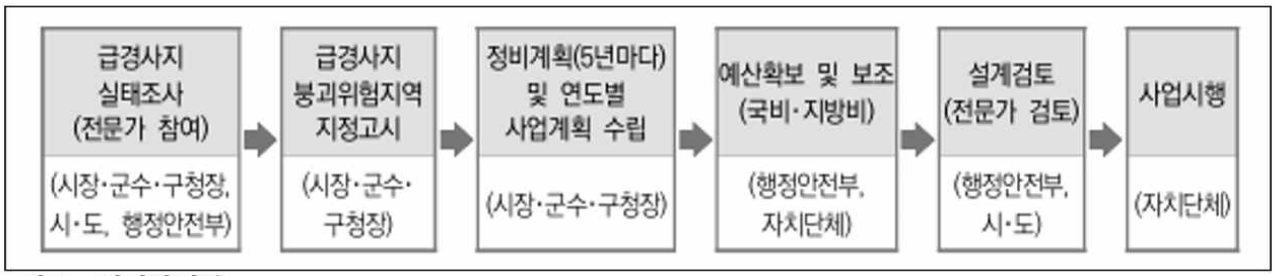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 각 시·군·구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면 붕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 이들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며, 한정된 재해 관련 예산의 적절한 분배를 목적으로 급경사지의 붕괴가능성과 붕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도를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중장기 정비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동 사업의 재원을 통해 해당연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국고보조율 50%)하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 금년도 대형산불 발생 5개 지역을 포함하여 2026년 완료 예정인 16개 지역 사업의 조기 완료 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형산불 후에는 지질환경변화로 기존 재해위험도 기준(경사도, 높이, 붕괴이력 등)과 상이한 토석류[5] 위험성을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불피해지역을 우선으로 개소를 선정하고 재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176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정비 중인 개소 중 조기 완료가 가능한 사업지 16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규모 ▸ 총 규 모: 259개소, 2,515억 5,400만원(국비 1,257억 7,700만원, 지방비 1,257억 7,700만원) - 2025년 본예산: 259개소, 1,080억 9,900만원 - 2025년 추가경정예산: 16개소(계속), 176억 7,800만원(개소당 평균 9억 7,100만원)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 자본보조(국고지원율 50%)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5) 토석류는 산사태의 일종으로 호우 시 물에 포화된 암석, 자갈, 모래, 흙의 혼합물이 빠른 속도로 경사면과 수로 등을 따라 흘러 내려 하류의 인가, 농지 및 도로를 덮쳐 피해를 입히는 재해를 말한다(국립산림과학원, 2011; Cannon, S.H., 2001)

○ 사업대상은 크게 두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산불 발생지역인 경남·경북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산림의 식생 소실에 따른 위험성 증가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 중인 5개소에 55억 2,5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공사가 조기 완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다음으로 기타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정비사업 중이면서 2026년에 완료 예정인 개소 중 1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도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될 예산은 121억 5,300만원이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대상지 및 예산액]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지자체명	개소명	예산액
산불발생지역 신규사업분	경상북도	영양(2)	2×2,210×50%=2,210
	경상남도	하동(1), 산청(2)	3×2,210×50%=3,315
	소 계	5개소	5,525
기존 사업개소 조기완료계획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1), 화천(1)	2×2,210×50%=2,210
	충청북도	영동(1), 보은(1)	2×2,210×50%=2,210
	충청남도	보령(1), 홍성(1)	2×2,210×50%=2,21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1), 장수(1)	2×2,210×50%=2,210
	전라남도	고흥(2)	2×2,210×50%=2,2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1)	1×2,210×50%=1,105
	소 계	11개소	12,153
합 계			17,67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이같이 추가 재정지원 시 조기완료가 가능한 사업지를 우선 정비하여 집중 호우 시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지 선정과 재원 배분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의 추경안은 산불 발생지역의 사면 피해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대상은 현재 정비 중인 곳 5개소이며 이들에 추경 증액분의 31%의 재원을 배분할 예정이고, 기타 지역에 69%의 재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산불 발생 후에는 초목 소실 문제뿐만 아니라 토질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속성이 생겨 평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사면에서도 토석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

○ 실제 캘리포니아 등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후 1~3년간 사면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불 후 토석류(Post-Wildfire Debris Flows) 위험평가와 피해예방에 대한 정부 역할을 명시하는 법안(NLPA; P.L. 116-323)이 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 역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고서 등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의 특성 변화를 관찰한 주요 연구들을 보면 이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6)]

○ 경남·경북의 산불 발생지역 역시 이전에 급경사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면이거나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구라고 해도 산불에 의한 토질 변화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더욱이 주요 사례 연구는 산불발생 후 나타나는 건조 산사태나 토석류는 쓸려온 나무둥치, 바위 등이 소하천과 같은 물길을 막아 집중호우 시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를 감안하면 산불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붕괴위험지역 지정 개소에 국한하여 사업을 계획하기보다 산불 발생 이전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경미한 차이로 B, C등급 분류[7)]되었던 지역에 대한 재평가 후 관련 수요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이종욱 외.(2019). 복합재해 영향을 고려한 산불 후 산사태 잠재적 피해 위험도 분석.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22(1), 33-45.

7) 관리기관에서 급경사지에 대해 붕괴위험성과 사회적영향도, 기타 영향인자 등에 근거하여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A~E등급으로 분류하는데 D와 E등급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C등급은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재해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A·B등급 지역은 정기점검만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긴급 정비가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시·도의 정비 우선순위 개소와 해당 자치단체 수요에 근거하여 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연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더불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5년 단위 정비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2~3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산불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한 개소를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현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급경사지는 택지 · 도로 · 철도 등에 부속된 자연 ·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면서 높이와 길이, 경사도 측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곳(예: 자연비탈면 높이 50m, 경사도 34°) 중에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 E 등급을 받은 지구에 한정되며 이 중에서도 인명 피해 가능성과 시민 불편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가 당해연도 사업 계획에 포함된다.

○ 이전년도 위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위험지역으로 선정되고 이미 정비 중인 곳만을 대상지로 국한하고 이들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데 집중하면 산불 발생지역의 사면 피해 등 2차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현재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를 운영 중으로 2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급경사지를 포함하여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 중임을 밝힌 바 있다.

○ 해당 TF를 중심으로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및 보완을 5월 15일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8]이다.

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4.18.), "산사태 중심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참고

○ 이를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불발생 지역에서 과거 붕괴 위험도와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으나 산불로 인해 위험도가 급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재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응급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당 재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경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논의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 분석 / 2025.6.) -

가. 현 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의3 등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디지털교육혁신 등 4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를 합산한 금액이다.

○ 특별교부금의 경우, 2024년 이전까지는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①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유형별 재원규모는 각각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이 2024~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8%로 조정되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5년도 본예산은 72조 2,794억 3,800만원이나 2025년 국가 일반회계 내국세 및 교육세 감소 예상분을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조 9,982억 3,500만원이 감액된 70조 2,81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형별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감소 예상분(8조 9,773억원)에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을 적용한 1조 7,955억원에 더해, 교육세분 교부금 감액분 1,318억원 등 총 1조 9,27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총 70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교부금은 각 유형별 배분 비율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336억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168억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56억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149억원 등 총 70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세부 산출내역
보통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67,732,259백만원 (△1,927,313백만원)** 가. 내국세분 교부금 (65,282,114백만원) · 내국세 △1,795,466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 × 96.2% 나. 교육세분 교부금 (2,450,145백만원) △131,847백만원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2,548,944백만원 (△70,922백만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1,033,814백만원** 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33,595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3.8%×(180/38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726,916백만원** 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16,797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3.8%×(90/38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242,306백만원** 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5,599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3.8%×(30/380)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545,908백만원** 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14,931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3.8%×(80/38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사업 추진현황 및 지방교부세의 감액 경정 미편성 등의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증감액 및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연도 중 내국세 등의 증감 현황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2016년, 2017년, 2020~2022년)하거나,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반영(2017~2022년, 2024년)하여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그러나 최근 2년간(2023~2024년) 내국세를 포함한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실제 수납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세수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수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중 10.4조원을, 2024년은 4.3조원을 미교부하면서 불용으로 처리하였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 없이 의무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도 중에 감액 교부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예산 편성 및 정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국회는 2013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를 반복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에 관한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구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2023 회계연도 결산	지방교부세·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배분 비율 준수 필요	관련 사업명	세수결손	
		지적 사항	○ 2013회계연도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18.6조원 미교부 반복 - 지방교부세 예산액 74.4조원 중 8.2조원 미교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8조원 중 10.4조원 미교부 - 2013년 세수결손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을 각각 2,500억원 불용함에 따라 국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위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사사례가 재발 ○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법정배분비율을 미준수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각각 내국세의 19.24% 및 20.79%로 규정 - 지방교부세법상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97%, 특별교부세는 3%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96.6%로 법정비율보다 0.4%p 낮음 - 지방교육재교부금법상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및 재난안전관리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현안 교부는 23.5%로 법정 비율보다 6.5%p 낮고, 재난안전관리는 7.8%로 법정비율보다 2.2%p 낮음	시정
		시정 요구 사항	○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등을 감안,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과 지자체 교육·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2025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세수재추계 결과('25.6.23.) 내국세 예산액 338.1조원 대비 약 9조원, 교육세 예산액 6.0조원 대비 0.3조원이 부족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최근 국회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교부금 예산을 미교부·불용 처리하지 않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고 이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세수에 연동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가 예산 계상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2항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9조제2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부금이 연도 중에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당해연도 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구조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교부금을 감액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 따라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조정하고자 할 경우,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도교육청과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편성한 상황이다.
- 이에 더해, 2016년 5월 29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통해 교부금 조절 유예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는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2025년 예측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10.3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감액 경정이 지방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액 조정 없이 당초 본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2조원 규모의 감액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사업 추진현황 및 지방교부세의 감액 경정 미편성 등의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의회